
자료

- 언론조정 · 중재 신청사례
 - 국내언론관계판결
 - 외국언론관계판결
 - 외국신문평의회사례
 - 언론법제관련문헌
-

PAC

언론조정 · 중재 신청사례

편집자 주 - 본 사례들은 사건개요를 게재한 것이므로 보도내용 원문, 피해구제보도문 등은 해당 사건이 수록된 연차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의 침뜸 치료는 효과가 없으며, 후원자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건번호 : 2011서울조정61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남수
피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중 재 부 :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 2011. 01. 28.
처리결과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피신청인 이의신청)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침뜸의 대가로 알려진 신청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다루면서 신청인 측이 암으로 숨진 영화배우 장진영을 침뜸치료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치료가 시작되었고, 침뜸치료가 장씨의 암치료에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일부 유명인들을 치료한 사실을 과장하여 홍보하고 있고, 신청인의 후원자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장씨에 대한 침뜸치료는 장씨의 소속사 간부와 장씨 부친의 간청으로 시작되었고, 침뜸치료가 암의 ‘림프절 전이’ 부분에 있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으며, ‘유명인 치료 과장’과 관련한 부분의 경우 신청인의 치료 후 현재 생존해 있는 유명인은 1명 채 의도적으로 고인이 된 사람의 가족들만 주로 취재해 신청인에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고, 후원자로부터는 건물을 기증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임대

받은 것이므로,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일부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하여 자동소제기 되어 현재 이 사건은 법원에 계류중이다.

■ 조정대상보도

SBS-TV 〈SBS뉴스추적〉 프로그램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터리’ 제하의 보도(2010년 11월 4일 23:15)

■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SBS-TV 오후 11시 15분 〈뉴스추적〉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한 방영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되, 조정대상보도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터리” 정정보도문

나. 내용 : 본 방송은 지난 2010년 11월 3일 오후 11시 15분에 뉴스추적 프로그램 “현대판 화타, 구당 김

남수 미스터리” 편에서 한국정통침구학회 김남수 회장의 96년 인생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첫째, 장진영 씨의 당시 남자 친구였던 남편 김○○ 씨가 ‘신청인이 침뜸으로 낫게 해주겠다고 했다.’라는 인터뷰와 관련해, 사실은 장진영 씨 소속사 간부의 간곡한 부탁과 장진영 씨 부친의 간청으로 치료가 시작된 것일 뿐 이러한 취지의 얘기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침뜸 치료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김○○ 씨의 인터뷰 역시 이상호 기자의 기록을 보면 침뜸 치료 시작 후 1개월이 지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주치의가 아닌 수련의가 알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마지막 치료일자 오류에 관한 김○○ 씨의 거짓 인터뷰에 관련해 사실은 김○○ 씨가 자신의 이메일에서 잘못을 시인했으나 인터뷰에서는 계속 2월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암의 전이도 날짜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진영 씨 암 치료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방송과 관련해 김○○ 씨 자신 책에서도 ‘효과가 있다’라는 의사의 증언이 나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오류를 김○○ 씨 스스로 범하고 있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SBS 취재진은 건국대 병원 의사만 취재해 당시 장진영 씨 치료를 맡았던 서울대 의료진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셋째,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뉴스추적 한 프로그램에서 83년과 87년으로 앞과 뒤가 다른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 사실을 잘못 증언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신청인이 이미 제출한 1954년 개원하고 있던 원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아도 명백한 허위 증언이고 확인하지 않은 보도이기에 이를 바

로잡습니다.

넷째, 유명인 치료 부분도 살아 있는 분들은 직접 취재가 가능한데 그의 가족 등만을 취재해 신청인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다섯째, 후원자에 대한 허위정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되었으나 신청인이 소유한 건물 등 한 칸도 없음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여섯째, 화상침에 대한 방송도 한의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신청인이 연구 보급한 뜬을 교묘하게 화상침으로 연결시켰고, 구당 화상침은 누구나 하는 침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일곱째, ‘이상호 기자가 침뜸치료 했다.’라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며, 단지 옆에서 도와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덟째, 화상환자 치료 부분과 관련해 구당 화상침으로 병이 나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등장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의도적으로 구당을 깎아내리기 위한 보도임이 밝혀졌습니다.

아홉째, 훈장 부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이미 행정착오로 공적이 바뀐 오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마치 신청인이 조작한 것처럼 뉘앙스를 주어 신청인이 마치 부도덕한 인물로 보이게 한 바 이 부분 역시 바로잡습니다.

■ 사건 처리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결정내용〉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SBS-TV 〈뉴스추적〉 프로그램 말미에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되, 제목 및 본문은 화면에 계속 표시하고 내용은 원 진행자

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가. 제목: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내용: 지난해 11월 4일 뉴스추적「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터리」제하의 보도와 관련, 구당 김남수 옹의 장진영 씨에 대한 침뜸치료는 장진영 씨 소속사 간부 및 부친의 간청으로 시작되었고, 암이 전이된 시기인 2월에는 구당이 장진영 씨를 진료한 적이 없으며, 장진영 씨를 마지막으로 치료한 날은 12월 25일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구당 김남수 측은 “침뜸을 이용한 장진영 씨의 암 치료 과정을 보면 림프절 전이 부분이 상당히 호전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김남수 옹은 유명인들을 치료한 사실에 대해 과장하여 홍보한 적이 없고, 후원자로부터 건물을 공짜로 기증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 임대 받은 것이며, 구당 화상침을 다른 한의사들도 쉽게 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구당 김남수 측은 “1954년 원주에서도 진료를 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 취득한 침구사 자격에 대하여 1983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적법하게 재발급 받았다. 행안부의 훈장 부분과 관련해, 구당은 침뜸 봉사활동 공로로 수여받았다고 알고 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신청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2009년 베트남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신청인 기관의 분석, 발표가 공색한 ‘짜맞추기’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건번호: 2011서울조정219·220

청 구 명: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중 재 부: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2011. 03. 18

처리결과: 조정성립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발표한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및 역학조사에 대해 다루면서, 정부가 2010년 베트남을 다녀온 안동의 축산농민을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경로로 추정하려는 의도에서 홍콩이나 러시아형 바이러스보다 일치도가 크게 떨어지는 2010년 베트남형 바이러스 실험결과를 놓아두고 2009년 것과 비교하는 등 검사결과를 ‘짜맞추기’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국제표준 연구소에서 안동 바이러스를 분석한 실험은 2010년의 베트남 바이러스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안동 바이러스와 2010년 베트남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98.44% 일치해 다른 국가의 바이러스 유전자 일치도와 별 차이가 없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해명과 입장을 담은 기고문을 오피니언 지면에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경향신문 『국제연구소 공개 2010년 베트남형 유전자 정보 놔두고 …, 정부, 2009년 것과 비교 ‘짜맞추기’』

제하의 기사(2011년 2월 16일자 3면)

내용 : 정부가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의 구제역 바이러스를 2009년 베트남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유사하다고 비교·발표한 데 대해 ‘궁색한 짜맞추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분석 결과가 없다고 한 2010년 베트남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도 구제역 국제표준연구소의 홈페이지에 작년 11월 당시 공개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안동 바이러스와 2009년 베트남 바이러스 유전자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직접 비교했더니 98.59%의 일치도가 나왔다”며 베트남을 유입 경로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2010년 베트남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정보가 국제기구 등에 등재된 바가 없어 2009년 바이러스를 비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제역 국제표준연구 홈페이지엔 2010년에 베트남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결과(지난해 11월 17일)가 공개돼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를 근거로 “국제표준연구소에서 안동 바이러스를 분석한 실험은 당연히 2010년의 베트남 바이러스도 포함된 상태에서 실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표준연구소가 이미 안동 바이러스의 유사성을 검토했지만 안동 바이러스의 유전자 트리에서 2010년형 베트남 바이러스는 찾아볼 수 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1월 초에 베트남을 다녀온 안동의 축산농을 국내 유입 경로로 지목하려면 안동 바이러스는 2010년 베트남 바이러스와 유사해야 하지만, 검사결과는 홍콩형·러시아형보다 일치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가 이 축산농을 역학조사하면서 최신의 과학적 정보를 무시한 채 역지로 2009년 베트남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비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해 4월 강화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는 99.06%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강

화 바이러스의 토착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의과학검역원 측은 “국제표준연구소가 밝힌 안동 바이러스의 유전자 트리에 2010년 베트남형이 안 보이는 것은 비교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경향신문 종합면 좌측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가. 제목 : 정부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짜맞추기’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나.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16일자 종합면에 “국제표준연구소 공개 2010년 베트남형 유전자 정보 놔두고... 정부, 2009년 것과 비교 ‘짜맞추기’”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4월 강화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11월 안동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는 99.06%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와 “국제표준연구소에서 안동 바이러스를 분석한 실험은 당연히 2010년의 베트남 바이러스도 포함된 상태에서 실험한 것”이라는 이춘석 의원의 발언 내용을 보도하고, “결과적으로 지난해 11월 초에 베트남을 다녀온 안동의 축산농을 국내 유입경로로 지목하려면 안동 바이러스는 2010년 베트남 바이러스와 유사해야 하지만, 검사결과는 홍콩형·러시아형보다 일치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제역 국제표준연구소의 분석결과 보고서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확인 결과, 지난해 4월 강화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11월 안동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98.44% 일치하였으며, 국제표준연구소에서 안동 바이러스를 분석한 실험은 2010년의 베

트남 바이러스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경로는 바이러스의 유사성 뿐 아니라 농장주의 발병국가 여행 여부, 입국 시 소독 여부 및 여행시기와 발병 시기의 근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안동 바이러스와 2010년 베트남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98.44% 일치하여 홍콩·러시아형과의 일치도와 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합의내용〉

1. 피신청인은 2011년 4월말까지 경향신문 오피니언면에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한 신청인 기고문을 게재하되, 그 형식은 오피니언면에 게재되는 기고문의 통상적인 방식을 따른다.

2. 신청인은 사건 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구제역 바이러스와 유전자, 조인수 수의과학검역원 해외전염병과장』 제하의 기사 (2011년 4월 26일자 오피니언면)

내용 : 구제역 바이러스에는 O, A, Asia1, C, SAT1, SAT2 및 SAT3형의 7가지가 있다. 이중 우리나라에 유입될 위험이 높은 것은 O, A 및 Asia1형 바이러스다. O형은 2000년과 2002년 그리고 2010년 4월과 11월에 발생했고, A형은 2010년 1월 포천에서 발생한 바 있다. Asia1형을 비롯한 나머지 5종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O형은 다시 유전자 특성에 따라 8가지의 지역형으로 나

뉘어진다. 이러한 지역형은 구제역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 중의 하나인 브이피원(VP1) 단백질과 관련된 639개의 유전자를 비교분석하여 구분하게 된다.

2000년과 2002년 경기도 파주와 안성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은 O형 중에서도 ME-SA(중동-남아시아)형이었고, 2010년 강화와 안동에서 발생한 것은 SEA(동남아시아)형이었다. 구제역 바이러스 O형은 주로 유럽 및 아시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발생을 보인다. 이중 SEA형은 주로 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다.

작년 11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도 SEA형이며 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Mya-98주 유래로 확인됐다. 유전자 분석결과 홍콩, 러시아,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지역 구제역 바이러스와 유전적 연관성이 있음이 확인됐다. 같은 해 4월 강화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는 98.44%의 유전자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번 구제역이 강화에서 발생했던 바이러스가 남아 있다가 재발생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첫째, 우리나라는 바이러스가 순환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과학적인 자료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제출하여 2010년 9월27일 청정국 인정을 받았다. 둘째, 전염력이 강하고 증상이 뚜렷한 구제역의 특성 때문에 수개월 이상 증상이 발견되지 않고 퍼져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자분석을 통해 유입경로를 파악할 수도 있으나 유입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역학조사결과가 가장 중요하며 유전자 분석결과만으로 유입원인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다. 농민뿐 아니라 구제역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구제역이 조속히 안정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다.

동료 교수를 횡령 혐의로 고발한 교수 4명에 대해 신청인 대학이 연구실 폐쇄조치를 했다는 등의 보 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건번호: 2011서울조정330 · 331

청 구 명: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피신청인: (주)한국대학신문

중 재 부: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2011. 03. 23

처리결과: 조정성립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신청인 학교법인 서강대학교가 동료교수 4명으로부터 고발됐던 K교수의 기소유에 처분사실을 알자마자 학과장에 임명했고, 보직 임명 후 K교수가 ‘4명의 고발 교수들과 경영대 건물을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자 이를 수용해 4명의 연구실을 폐쇄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이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K 교수는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학과장 임명은 무혐의 처분일 이전에 이뤄졌고, 4명의 동료교수 연구실은 K 교수가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폐쇄됐으며,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 중 ‘연구실 폐쇄’ 부분만 간접강제 결정을 받은 것이라며 정정보도와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한국대학신문과 한국대학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정보

한국대학신문 『서강대 이상한 인사 ‘뒤숭숭’』제하의 기사(2011년 2월 14일자 2면)

내용: 서강대가 지난해 국고 연구비 횡령 의혹을 받아 고발됐던 경영대 K교수에게 보직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K교수가 보직을 맡은 후, 그를 고발했던 동료 교수 4명은 대학 측으로부터 연구실을 폐쇄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강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K교수를 WCU사업단인 경영전문대학원 서비스시스템경영공학과장에 임명했다. K교수는 지난해 7월 국고 연구비 횡령 혐의가 의심돼 4명의 동료 교수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주목되는 사실은 K교수가 학과장 임명 다음날인 12월 29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 서강대가 K교수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것을 미리 알고 보직 임명을 했으리란 추측이 가능하다.

서강대 한 교수는 “비록 기소유예라 하더라도 혐의가 없다고 판결 내려진 게 아니라, 증거 불충분이다. 완전히 혐의가 없다고 확인될 때까지 검증을 거친 후 보직을 맡기는 게 옳지 않느냐”며 “학교 측이 K교수의 기소유예 사실을 알자마자 즉각 학과장에 임명한 건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서강대 교수 역시 “보직이란 한 대학을 대표하는 자리다. 대학이 이 같은 자리에 불명예스러운 의혹을 받고 있는 K교수를 앉힌 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K교수가 지난달 말 이종욱 총장에게 “4명의 고발 교수들과 경영대 건물을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에서 이를 수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강대는 최근 K교수를 고발한 4명의 경영대 교수들이 자신의 연구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현재 4명 교수는 학내 게스트하우스 숙소, 창업보육센터가 건물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강대 한 교수는 “K교수가 학과장으로 있는 서비스시스템경영공학과는 WCU사업단이 다. 그런데 현재 학과를 이끌어 갈 교수가 K교수 외엔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며 “대학 측도 ‘울며 겨자먹

기' 식으로 K교수에게 보직을 맡기고,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WCU를 반납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서강대 측은 K교수 인사 논란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강대 재단 관계자는 "이는 교수들 간 내부 문제다. 또 아직 고발 교수들에 대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다만 K교수는 고발당했고 결과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K교수 입장에서는 불공정 인사 논란이 역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강대 경영대 교수 4명은 동료인 K교수의 국고 연구비 횡령 의혹 등을 검찰에 고발, '해교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11월 4명 교수들은 법원에 지위보존가처분 신청을 냈고 12월 재판부는 "동료 교수의 연구비 횡령 등을 외부에 공표한 점이 해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교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원 판결을 서강대는 불이행했고, 4명 교수들은 지난달 14일 법원에 간접강제 이행 신청서를 제출했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한국대학신문 제2면 좌측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2. 피신청인은, 한국대학신문(<http://www.unn.net>)의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1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조정대상기사(서강대, 이상한 인사 뒤숭숭)의 기사 본문 하단에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 3. 31.까지 금 2천 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연할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서강대 이상한 인사 뒤숭숭' 정정보도문(또는 '서강대 이상한 인사 뒤숭숭' 관련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나.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2월 14일 ~ 2월 19일(제 781호)자 신문 제2면에 「서강대 이상한 인사 뒤숭숭」이라는 제목으로, ①「K교수가 보직을 맡은 후, 그를 고발했던 동료 교수 4명은 대학 측으로부터 연구실을 폐쇄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②「K교수가 학과장 임명 다음날인 12월 29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유에 처분을 받았다」, ③「비록 기소유에 라 하더라도 혐의가 없다고 판결 내려진 게 아니라, 증거 불충분이다」, ④「학교측이 K교수의 기소유에 사실을 알자마자 즉각 학과장에 임명한 건 부적절한 처사」, ⑤「K교수가 지난달 말 이종욱 총장에게 '4명의 고발 교수들과 경영대 건물을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탄원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에서 이를 수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서강대는 최근 K교수를 고발한 4명의 경영대 교수들의 연구실을 자물쇠로 막고, 보안장치를 설치했다」, ⑥「해당교수들은 법원에 지위보존가처분 신청을 냈고, 12월 재판부는 '동료 교수의 연구비 횡령 등을 외부로 공표한 점이 해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교수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원 판결을 서강대는 불이행 했고」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확인한 결과, K교수를 고발했던 동료 교수 4명에 대한 연구실은 K교수가 보직을 맡기 약 1개월 전에 이미 폐쇄가 되었으며, K교수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2010. 12. 29. 기소유에 처분이 아니

라 2010. 12. 30. 혐의 없음 처분이고, 2010. 12. 28.부로 K교수를 학과장에 임명하였고 이는 K교수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일보다 앞선 것으로 서강대가 기소유예 사실을 알자마자 학과장에 임명한 것이 아니며, 4명의 고발 교수들에 대한 연구실 폐쇄일은 2010. 12. 1.이며 K교수의 탄원서는 2011. 1. 25.에 제출된 것으로 연구실 폐쇄와 K교수의 탄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서강대는 지위보전가처분 결정의 6개 의무 사항 중 ‘연구실 폐쇄’ 부분에 대하여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았으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합의내용〉

1. 보도문

가. 제 목 : 〈정정보도문〉

나. 내 용 : 본지는 지난 2011년 2월 14일 ~ 19일 자 제781호 2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체뉴스 대학행정면에서 「서강대 이상한 인사 뒤숭숭」 제하의 보도와 관련, 사실 확인 결과, K교수가 학과장에 임명된 것은 2010. 12. 28.이고, 2010. 12. 30. 자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동료교수 4명의 연구실은 K 교수가 보직을 맡기 이전에 폐쇄됐으므로 2011. 1. 25.에 제출된 K 교수의 탄원서는 연구실 폐쇄와는 무관하며, 서강대는 법원의 지위보전가처분 결정 중 ‘연구실 폐쇄’ 부분에 대해서만 간접강제 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1년 4월 18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대학신문〉 2면에 게재하되, 제목은 〈한국대학신문〉의 통상적인 〈정정보도문〉 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지면에 기사를 게재한 시점부터 7일

간 동안 〈한국대학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중앙 목록에 상기 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 및 내용은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활자와 크기로 하며, 메인 화면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고, 조정대상기사의 하단에 위 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대학신문 2011년 4월 18일자 2면), (인터넷 한국대학신문 2011년 4월 18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조정대상보도 하단)

내용 : 〈상단 ‘합의내용 - 1. 보도문’ 참조〉

유사경유를 주입하는 전세버스 업체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회사의 버스사진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건번호: 2011서울조정343·344

청 구 명: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주)○○고속관광

피신청인: (사)한국주유소협회(한국주유소협회신문)

중 재 부: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2011. 03. 25

처리결과: 조정성립

■ **사건개요:**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경유 버스 운전자들에게 보일러 등유를 판매한 자들이 적발됐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신청인 회사 소속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회사는 자신들은 유사경유를 사용한 바가 없으며, 기사내용과 무관한 신청인 회사 소속 버스 사진이 실려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1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한국주유소협회신문 1면과 한국주유소협회 홈페이지 팝업창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1백5십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 조정대상보도

한국주유소협회신문 『시민들이 탑승하는 버스도 유사경유 주입』 제하의 기사 (2011년 3월 5일자 10면)

내 용 : 경유 버스 운전자들에게 보일러 등유를 판매한 자와 이를 구입한 버스 운전사들이 적발됐다. 지난 28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보일러 등유를 판매한 김모씨(28)를 불구속 입건하고 또 이를 구입해 경유 차량에 보일러 등유를 주입하고 운행한 버스 운전기사들을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부산 동래구 명장동 한 전세버스 차고지에서 1톤짜리 탱크로리를 이용해 보일러용

등유를 팔기 시작했다. 이후 유가가 폭등하자 보일러용 등유를 버스운행에 이용하겠다는 버스운전자들이 몰렸고 김씨는 10달 동안 15만ℓ의 보일러 등유를 팔아 1억 6,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보일러 등유를 넣고 운행한 전세버스가 약 50대에 달하며 버스 한 대당 한 달에 최고 20여 차례 보일러 등유 주입후 전국 각지를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은 ‘이 과정에서 버스기사들이 허위전표를 발급받아 한 달에 수 십 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유 차량에 보일러 등유 주입 후 운행할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장기간의 등유 사용으로 차량 부품 일부가 마모돼 그 사이로 기름이 흐르면 고온의 엔진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차량들이 대부분 시민을 태우는 버스라는 점에서 위험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2면 상단에 상자기사로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크기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크기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일천오백만 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

가. 제목: 정정보도문

나. 내용: 본 신문 지난 3월 5일 10면 상단에 보도된 “시민들이 탑승하는 버스도 유사경유 주입” 기사와 관련하여 부산에 있는 전세버스 업체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그와 전혀 무관한 무주리조트에 세워진 (주)광남고속관광의 버스사진을 찍어서 게재하여 마치 (주)광남고속관광이 유사경유를 주입한 것처럼 보도하였

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주)광남고속관광은 기사내용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사건 처리결과: 조정성립

〈합의내용〉

1. 보도문

가. 제목: 〈정정보도문〉

나. 내용: 본 협회 신문은 지난 2011년 3월 5일자 10면 「시민들이 탑승하는 버스도 유사경유 주입」 제하로 경유 버스 운전자들에게 보일러 등유를 판매한 자들이 적발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광남고속관광’ 소속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사진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광남고속관광’ 소속 버스는 유사경유를 사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기사의 내용과는 무관한 업체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입은 ‘광남고속관광’ 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11년 4월 20일까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한국주유소협회신문〉 1면에 박스기사로 게재하되, 제목은 〈한국주유소협회신문〉의 통상적인 〈정정보도문〉 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활자 및 크기와 동일하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1년 4월 25일까지 금 1,5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은 2011년 4월 18일부터 2주일 동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한국주유소협회신문〉 홈페이지 팝업 창을 띄워 접속 시마다 위 보도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합의사항 이행결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주유소협회신문 2011년 4월 20일자 1면, 인터넷 한국주유소협회신문 2011년 4월 18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내용: 〈상단 ‘합의내용-1. 보도문’ 참조〉



국내언론관계판결

편집자 주-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주소 등을 익명처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하였습니다.

[판례 1]

대법원, ‘안기부 X파일’ 관련

도청된 대화내용 보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행위의 주체를 ‘제1호의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여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지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규정의 문언이나 조문의 체계,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신 또는 대화의 불법 감청·녹음 등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경로를 통하여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공개·누설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월 17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도청된 대화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에게 모두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국가기관의 불법 도청을 고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고 볼 수 없고, 보도시점에서 8년 전 대화가 비상한 공적 관심

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사자의 실명을 그대로 보도하고 도청 자료 입수 과정에서 사례비를 지급하는 등 방법의 상당성도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김 전 편집장도 자료의 취득과 정이나 보도 방법 등에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홍훈 등 5명의 대법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재제와 정치권의 유착 관계에 대한 실체를 고발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 기자는 1997년 9월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만나 특정 대통령 후보 진영에 대한 정치자금 지원과 정치인·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한 추석 떡값 지급 등의 문제에 대해 나눈 대화를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비밀 도청팀 ‘미림’이 불법 도청해 만든 ‘안기부 X파일’ 테이프를 입수해 2005년 7월 보도한 혐의로, 김 전 편집장은 그 다음달 녹취록 전문을 보도한 혐의로 2006년 3월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기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 전 편집장에게는 “녹취록 전문을 가감없이 보도했고 그 내용 중 공익상 필요성이 없는 부분까지 보도한 책임이 있다”며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도청된 테이프임을 알고도 대화 내용을 실

명 보도하는 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크게 벗어났다”며 이 기자에게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대 법 원 판 결

사 건 : 2006도883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 : 1. 이상호

2. 김연광

상 고 인 :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 외 2인

원 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9. 29. 선고

판 결 선고 : 2011. 1. 1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이상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헌법은 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 보호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이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공개의 염려 없이 사적 영역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통신의 영역에서 두텁게 보호한다는 전통적인 기능을 넘어, 개인 간의 의사와 정보의 무제한적인 교환을 촉진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나아가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이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제18조에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여 개인 간의 의사소통이 양적·질적으로 더욱 확대되고 편리해진 반면에, 이에 수반한 감청장비 및 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국가기관은 물론 사인까지도 손쉽게 다른 사람의 통신이나 대화를 불법 감청 내지 녹음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통신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감청 내지 녹음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그 피해가 사인의 그것에 비하여 중대하고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기가 어려운데, 과거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경험하였던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관에 의해 통신의 비밀이 침해되고 마침내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까지도 들여다보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법 감청이나 녹음에 의한 통신비밀의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와는 별도로 그러한 행위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비밀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까지도 금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불법 감청 내지 녹음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물의 공개 내지 누설을 봉쇄함으로써 그와 같은 행위를 하려는 유인 자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이와 같은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먼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행위 등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이하 이러한 행위들을 ‘불법 감청·녹

음 등' 이라고 한다)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제1항 제2호). 이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의 공개·누설행위를 불법 감청·녹음 등의 행위와 똑같이 처벌 대상으로 하고 그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그 정보 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이는 불법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한편 민주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공적 관심사항에 관한 언론의 자유 또한 헌법상의 중요한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고,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확인하고 있듯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언론기관의 보도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언론의 자유가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앞서 본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누설금지 조항의 적용을 함부로 배제함으로써 통신의 비밀이 가볍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형법은 제20조에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위법성조각사유를 두고 있는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그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통신비밀의 공개·누설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따라서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의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에 관한 보도가 통신의 비밀이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이익을 능가하는 우월적인 가치를 지님으로써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다.

(3) 이와 같이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것이 공적인 관심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

첫째, 그 보도의 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등이 불법 감청·녹음 등과 같

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사실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기관 본연의 사명이라 할 것이고, 통신비밀보호법 자체에 의하더라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제8조),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 아래에서는 개인 간의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허용된다.

둘째,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함에 있어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셋째, 그 보도가 불법 감청·녹음 등의 사실을 고발하거나 비상한 공적 관심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한정되는 등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 이익의 비교·형량은 불법 감청·녹음된 타인간의 통신 또는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 통신 또는 대화 당사자의 지위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불법 감청·녹음 등의 주체와 그러한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언론기관이 그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보도의 목적, 보도의 내용 및 그 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실관계 중 상고이유에 관련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도청자료는 전 국가안전기획부 내 정보수집기관인 미림팀이 1997. 4. 9., 같은 해 9. 9. 및 같은

해 10. 7.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사이에 호텔 식당 등에서 이루어진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로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진영에 대한 삼성그룹 측의 정치자금 지원 문제 및 정치인과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이른바 추석 떡값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한 대화가 담겨 있다. 미림팀장이었던 공OO은 이 사건 도청자료를 임의로 반출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1999. 9.경 당시 집권당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삼성그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던 박OO에게 이를 넘겨주었다. 그 후 박OO는 2004. 12.경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고만 한다)의 기자인 피고인 이상호를 만난 자리에서 위 녹취보고서를 건네주면서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불법 녹음한 것인데 그 무렵 주미대사로 임명된 홍석현의 과거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위 피고인은 문화방송의 간부들과 상의한 결과 녹음테이프 없이 녹취보고서만으로는 이 사건 도청자료를 보도할 수 없다고 결론짓고 미국으로 건너가 박OO를 만나 취재 사례비조로 우선 1,000달러를 지급하면서 추가로 문화방송에서 취재비 명목으로 1만 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말한 후, 그와 함께 귀국하여 그로부터 위 녹음테이프를 교부받았다. 위 피고인은 위 녹음테이프를 복사한 다음 그 녹음된 음성 성의 성문분석을 위하여 박OO와 함께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확인 작업을 마친 후 그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2005. 2.경부터 위 피고인이 이른바 ‘엑스파일’을 입수하였다는 소문이 언론계에 퍼지기 시작하자, 그 무렵 문화방송은 ‘안기부 엑스파일’ 관련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이었던 임OO을 찾아가는 등 이 사건 도청자료의 출처를 추적하는 한편, 그 내용의 보도에 따른 법률검토에 착수하여 문화방송 고문변호사들로부터는 보도의 내용이 공익에 관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자문을 구한 다른 변호사들 기타 법조 관계인들로부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그 보도를 보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2005. 6.경 인터넷 언론매체에서 ‘MBC와 이상호 기자는 침묵을 깨’라는 기사를 게재하여 이 사건 도청자료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같은 해 7.경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이 각기 이 사건 도청자료의 존재와 그 내용에 관하여 비실명 요약보도의 형식으로 기사를 게재하자, 문화방송도 이 사건 도청자료를 보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불법 녹음의 피해자인 홍석현과 이학수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이 사건 도청자료와 관련된 일체의 보도를 하지 말 것을 구하는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 녹음테이프 원음을 직접 방송하거나 녹음테이프에 나타난 대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실명을 직접 거론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송 등을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방송은 2005. 7. 21. ‘9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 중앙일간지 사주와 대기업 고위관계자 간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입수하였다는 것, 위 녹음테이프에는 대기업이 1997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 진영에 로비를 하고 정치인과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대규모로 추석떡값을 보낼 리스트를 검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따라 당사자의 실명과 육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도하는 수준에 그쳤다가, 그 다음날인 7. 22.부터 후속보도로 이 사건 도청자료를 입수하게 된 경위와 그 수록 내용을 대선자금 제공, 여야 로비, 검찰 고위인사 관리 등으로 세분하여 상세히 보도하면서 대화 당사자와 대화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하였다. 한편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시 기업들이 정치권에 대선자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위 보도 이전에 이미 수사가 이루어졌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통신비밀 공개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이 사건 도청자료는 국가기관이 자신들의 대화를 공론화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사인들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진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한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도청자료를 입수하고 그 성문분석을 통해 원본임을 확인하는 한편, 그 출처에 대한 추적과 그 내용의 보도에 관한 법률자문 등을 통해 그 녹음과정 및 실명공개 불법성을 확인하고도 그 수록 내용을 실명으로 보도하기까지의 제반 경위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우선 위 피고인이나 문화방송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불법 녹음이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도청자료에 담겨 있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그 대화의 당사자나 내용 등이 공중의 관심을 끌 만한 사안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공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굴지의 재벌그룹 경영진과 유력 중앙일간지 사장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나 정치인과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이른바 추석떡값을 지원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는 것은 그 진위 여부를 떠나 논의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인 관심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대화의 내용은 앞으로 제공할 정치자금 내지 추석 떡값을 상의한 것이 실제로 정치자금 등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아닐 뿐더러, 이 사건 보도가 행하여진 시점에서 보면 위 대화는 이미 약 8년 전의 일로서 그 내용이 보도 당시의 정치질서 전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시 기업들의 정치자금 제공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도 이전에 이미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대화 내용의 진실여부의 확인 등을 위한 심층·기획 취재를 통해 밝혀

진 사실 및 그 불법 녹음 사실을 보도하여 각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함으로써 장차 그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확인 작업도 없이 곧바로 불법 녹음된 대화 내용 자체를 실명과 함께 그대로 공개하여야 할 만큼 위 대화 내용이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도청자료가 불법 녹음이라는 범죄행위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녹음테이프를 입수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녹음테이프의 소지인을 만나 취재 사례비 명목의 돈으로 1,000달러를 제공하고 앞으로 1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단순히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녹음의 범행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법 녹음된 대화의 당사자나 내용의 공적 관심도에 착안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자료의 취득에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셋째, 위 피고인이나 문화방송은 국가기관이 재벌 경영진과 유력 언론사 사장 사이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한 일이 있었다는 것과 그 대화의 주요 내용을 비실명 요약 보도하는 것만으로도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녹음 사실 및 재계와 언론, 정치권 등의 유착관계를 고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 당사자 등의 실명과 대화의 상세한 내용까지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일탈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보도가 나가기 전에 법원이 이 사건 도청자료의 전면적인 방송 금지가 아닌 녹음테이프 원음의 직접 방송, 녹음테이프에 나타난 대화 내용의 인용 및 실명의 거론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치분결정을 하였는바, 그 취지는 이 사건 도청자료와 관련된 내용의 보도는 허용하되 대화 당사자들에 대한 통신비밀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명의 거론이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의 보도를 금지한 것이다. 이처럼 법원이 서로 상충하는 통신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면서 최대한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나 문화방송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대화 당사자들의 실명과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그대로 공개한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넷째, 이 사건 보도가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녹음행위를 폭로하고 아울러 재계와 언론, 정치권 등의 유착관계를 고발하여 공공의 정보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켜 주고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공익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이와 같은 공익적 효과는 비실명 요약보도의 형태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화의 내용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대화당사자들에 대하여 그 실명과 구체적인 대화 내용의 공개로 인한 불이익의 감수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대화당사자들이 비록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생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소위 공적 인물로서 통상인에 비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대화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법 감청 내지 녹음되고 공개될 것이라는 염려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쉽게 제한할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앞서 본 이 사건 대화가 불법 녹음된 경우,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도청자료를 취득하게 된 경우, 이 사건 보도의 목적과 내용, 방법 등 이 사건 보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보다 결코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도청자료를 공개한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허용된다고 한다면 장차 국가기관 등이 사인 간의 통신이나 대화를 불법 감청·녹음한 후 소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언론기관 등과 같은 제3자를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는 상황에 이르더라도 사실상 이를 막을 도리가 없게 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통신비밀 공개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판단유탈 주장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한 문화방송 기자들과 공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득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였다는 것이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박OO로부터 이 사건 도청자료 중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문화방송 간부들과의 상의 아래 적극적

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하고 그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도청자료의 보도 과정에 관여하였다면, 이 사건 보도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도가 문화방송의 보고체계에 따라 결정되어 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위 피고인의 면책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김연광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에서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행위의 주체를 ‘제1호의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여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지득한 자’로 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규정의 문언이나 조문의 체계,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신 또는 대화의 불법 감청·녹음 등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경로를 통하여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알게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공개·누설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김연광은 월간조선 편집장으로 있던 당시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들이 불법 녹음하여 제작한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 등이 존재한다는 소문을 듣고 편집부 소속 직원을 통해 녹취록과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다음 문화방송의 위와 같은 보도가 나간 후인 2005. 8.경 편집국 소속 기자로 하여금 월간조선에 위 녹취록과 녹취보고서의 내용 전문을 게재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 사항과 관계없는 사적인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위 1의 가.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월간조선의 보도는 통신비밀의 취득과정, 보도에 의하여 공개된 대화의 내용, 보도 목적과 방법 등에 있어서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공개행위에 있어 위법성 조각을 위하여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위 피고인의 통신비밀 공개행

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위 1의 가.항 판단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4. 위 1의 가.항 판단에 대한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인복의 반대의견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공개자가 통신비밀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지득하였는지, 그 통신비밀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불문한다. 이에 의하면,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비밀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도하는 경우에도 위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언론기관의 보도행위가 예외 없이 위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 되므로, 여기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통신의 비밀 보호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 및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적인 조화를 도모하는 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공개행위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 그런데 다수의견은,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 또는 언론기관 종사자의 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공개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를 기본적으로 그 공개가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거나 공개되는 통신비밀의 내용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면서, 이때에도 언론기관이 적극적·주도적으로 통신비밀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개 방법의 상당성도 갖추어야 하고, 그 공개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여야만 정당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이와 같은 요건을 토대로 피고인 이상호의 이 사건 보도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할 수 없다.

(1)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그리고 긴급성과 보충성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위 법리는 결과반가치적 측면과 행위반가치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개별 사안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나, 그 내용의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행위자에게 어떠한 경우에 적법 또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언론기관의 통신비

밀 보도행위가 통신의 비밀 보호와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두 기본권의 충돌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법리를 양 기본권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구체화하고 양 기본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수의견이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의 통신비밀 보도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제시하고 있는 요건은 상충하는 통신의 비밀 보호와 언론의 자유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의 모색이라고 볼 수 없다.

(2) 먼저, 다수의견이 예외적으로 통신비밀의 공개를 허용하는 경우에 관하여 보자.

(가) 다수의견은 언론기관의 통신비밀 공개가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불법 감청·녹음 등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공개·누설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다수의견도 이를 의식하여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통신비밀의 공개를 허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그 경우에도 불법 감청·녹음 등의 고발이라는 보도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한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한 보도 목적은 통상 언제,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진 통신 또는 대화를 불법 감청·녹음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만으로도 충분하고, 굳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다수의견은 언제, 어떤 장소에서 통신 또는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막연한 고지 행위만을 허용한다는 것이지,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알려주는 의미의 공개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

항 제2호의 ‘공개·누설’은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모르는 타인에게 알려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다수의견은 어떤 경우에도 통신비밀의 공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 이에 동의할 수 없다.

(나) 또한 다수의견은 통신비밀의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로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사실상 테러범의 테러계획, 타인을 상대로 한 범죄 모의 등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직접적이고도 임박한 위협을 내용으로 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다수의견이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보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 문맥상 이는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야기에 준하는 정도의 비상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 이에 포섭될 수 있는 사안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비상적 상황에서라면, 통신비밀의 공개행위는 언론의 자유를 언급할 필요 없이 경우에 따라 형법 제22조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그 공개자가 불법 감청·녹음 등을 자행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통신비밀의 공개행위는 통신의 비밀 보호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다수의견이 정당행위의 인정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통신의 비밀 보호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한계 설정의 기준으로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한편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한 통신비밀 공개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종래 판례가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들고 있는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은 그 적용이 완화되거나 달리 이해되어야 한다. 즉, 문제된 통신비밀의 내용이 공개 당시에 중대한 공적 관심의 대상으로서 시의성을 잃지 않고 있다면 그 긴급성을 부인할 수 없고, 통신비밀의 직접적이고 진실한 공개만이 중간자의 가공·편집에서 비롯되는 왜곡과 오해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보충성의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을 다른 범죄행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히 적용한다면, 통신비밀의 공개행위가 주로 과거에 이루어진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그 대상으로 하는 이상 긴급성과 보충성을 충족할 여지가 거의 없게 되어 사실상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란 다른 말로 구체적이고 임박한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수의견은 오히려 긴급성과 보충성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부당하다.

그리고 다수의견에 따르면 이 사건 도청자료는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공개는 전면적인 보도이든, 비실명 요약 보도이든 어떠한 형태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일관된 기준에 따른 해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도청자료의 방송금지가처분재판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서의 녹음테이프 원음의 직접 방송, 녹음테이프에 나타난 대화 내용의 인용 및 실명의 거론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도청자료의 전면적인 방송금지를 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이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상충하는

통신의 비밀과 언론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면서 최대한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 이러한 다수의견의 태도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ㄷ)한편, 다수의견은 이 사건 보도에 의하여 공개된 대화의 내용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하여 그 공익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공익적 관심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언론기관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임을 부인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이 언론기관의 통신비밀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위와 같이 ‘공개·누설행위가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기 위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경우’ 또는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 극히 제한하는 이유는, 언론기관이 그 입수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면 이를 토대로 심층·기획 취재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실을 밝혀내어 보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언론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한 수사기관이 아닌 바에야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주체가 국가기관이고 그 결과물도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내용인 경우라면 당사자나 관련자가 그 취재에 협조할 리도 만무하다. 이러한 점에서 다수의견은 언론기관에 대하여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3)다음으로, 다수의견은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그 취득에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극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위법한 방

법’으로 취득한 경우라 함은 다수의견이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취득행위가 형사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보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수긍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적극적·주도적으로’ 취득에 관여한 경우도 그 위법성 조각을 부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적극적·주도적으로’ 취득에 관여한 경우가 어떠한 의미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다수의견은 ‘우연히·수동적으로’ 통신비밀을 취득한 경우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언론기관이 어떠한 경로로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를 보유한 사람에게 먼저 접근하여 그 결과물을 넘겨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를 취득한 경우는, 우연히 그 결과물을 취득한 경우와는 달리 평가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취득과정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한 방법이 개재되지 않았다면, ‘적극적·주도적으로’ 취득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도행위의 위법성 조각을 바로 부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욱이 적극적·주도적으로 취득에 관여한 행위의 의미를 위와 같이 ‘우연히·수동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해석한다면, 당초 우연히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 중 일부를 입수하게 된 언론기관이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그 입수한 자료의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재활동의 일환으로 나머지 자료를 입수하는 것도 적극적·주도적으로 그 결과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다수의견에 따르면 그 보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언론기관에 대하여 그 본연의 활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편 다수의견은 언론기관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한 것이라면 그 보도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주도적으로 취득에 관여한 경우'라는 소극적 요건도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여 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을 자행하려는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하였다면 이는 취득과정의 위법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불법 감청·녹음 등을 교사 내지 방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언론기관의 보도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을 거론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불법 감청·녹음이 행해진 상태에서, 언론기관이 사후에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결과물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과연 일률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일반적인 취재과정에서도 정보원에게 취재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다,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 그 결과물을 언론기관에 제공할 경우 감수하여야 할 위험이나 그 결과물의 중대성 등 구체적인 사정의 고려 없이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그 취득과정 나아가 그 보도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사안의 실체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수의견이 적극적·주도적으로 통신비밀의 취득에 관여한 경우를 정당행위의 소극적 요건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4) 그 외 다수의견이 언론기관의 통신비밀 보도행위에 대한 정당행위의 인정 요건으로 들고 있는 방법의 상당성과 법익균형성은 정당행위의 핵심적 성립요건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들 요건은 나머지 요건들과의 유기적 연관하에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로, 위와 같이 나머지 요건들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상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은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요컨대 다수의견은 통신의 비밀 보호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지점에서 통신의 비밀 보호에 편향됨으로써 두 기본권이 모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조화점이나 경계를 찾는 데 소홀히 하였다고 생각한다.

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신의 비밀 보호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에 관해서는 다수의견이 잘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다. 한편 언론의 자유는 개인이 언론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개인적 가치인 자기실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기본원리로 공생·공존 관계를 유지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인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언론기관의 통신비밀 보도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둘러싸고 이와 같이 우열관계를 가리기 어려운 기본권인 통신의 비밀 보호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추상적인 이익형량에 의하여 양자택일식으로 어느 하나의 기본권만을 쉽게 선택하고 나머지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 충돌하는 기본권이 모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조화점을 찾도록 노력하되 개별 사안에서 언론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와 통신의 비밀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그 보도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통신비밀의 취득과정, 보도의 목적과 경위, 보도에 의하여 공개되는 통신비밀의 내용, 보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보도를 통하여 공개되는 통신비밀의 내용이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공공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고, 언론기관이 범죄행위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통신비밀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도의 방법에서도 공적 관심사항의 범위에 한정함으로써 그 상당성을 잃지 않는 등 그 내용을 보도하여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어떠한 경우에 통신비밀의 내용이 그 공개가 허용되어야 하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그 내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효과, 통신 또는 대화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활동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여부, 그 공개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와 같은 기준에서 피고인 이상호의 이 사건 보도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도청자료에 담겨 있던 대화 내용은 주로 홍석현과 이학수 사이에서 논의된 대통령 선거 정국의 기류 변화에 따른 여야 대통령후보 진영에 대한 국내 굴지 대기업의 정치자금지원 문제와 정치인 및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이른바 추석 떡값 등의 지원 문제로서, 이를 통하여 위 대기업이 대통령 선거 정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공권력 행사의 일선에 있는 검찰조직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내용들이다.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 대통령 선거는 국

민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 정치행위로서 헌법에서 규정한 선거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하고, 모든 형사사건의 최종적·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조직은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는 수명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직무의 엄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대통령 선거와 검찰조직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태는 민주적 헌정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서 매우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수의견은 위 대화가 이 사건 보도 시점으로부터 약 8년 전에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시의성이 없어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그 이후로 재계와 정치권 등의 유착관계를 근절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치 환경이나 위 대화 속에서 정치자금 제공자로 거론된 대기업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청자료의 공개를 통해 제기된 재계와 언론, 정치권 등의 유착 문제가 단지 과거의 일이라는 이유로 시의성이 없다고 평가 절하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위 피고인이 박OO로부터 이 사건 도청 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범죄행위도 자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다. 구체적인 도청자료 취득 과정을 보면, 박OO가 먼저 위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도청자료의 존재를 알리면서 그 중 녹취보고서를 건네주었던 것으로, 위 피고인이 이후 박OO에게 녹음테이프의 제공을 요구한 것은 위 녹취보고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위 피고인이 녹음테이프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박OO에게 취재 사례비로 돈을 지급하고 장차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도청자료에 담겨진 내용의 중대성이나 이 사건 도청자료를 넘겨주는 데 따르는 위험 등을 고려하면, 이는 취재의 관행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사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도청자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취했던 일련의 조치들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요소가 개재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보도 방법의 상당성에 관하여 보면, 위 피고인과 문화방송은 이 사건 도청자료 중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만을 보도하였고 그 외 공공성의 정도가 약한 내용이나 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이 사건 도청자료를 확보한 뒤 성문분석과 그 출처에 대한 보강취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도청자료의 진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나름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법률자문을 통하여 그 공개에 대한 관계 법령의 검토를 하는 등 보도에도 신중을 기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보도 과정에서 대화 당사자들이나 그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명이 공개되기는 하였으나, 그 공개된 대화 내용이 갖고 있는 중대한 공공성 및 이들의 사회적 지위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이 사건 보도행위가 그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보도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불법 감청·녹음과 재계와 언론, 정치권 등의 유착관계 실태를 고발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으며, 대화 당사자들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기업의 간부 내지 유력 일간지의 사장으로서 공적인 인물들이라 할 것이므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 사건 도청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입게 되는 어느 정도의 인격권의 침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이 사건 보도 이전에 이미 다른 언론매체를 통하여 대화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처분신청과정에서 대화 당사자들의 실명까지 공개된 이상 대화 당사자들의 그 비밀 보호에 대한 기대이익도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이 사건 불법 녹음의 주체 및 불법 녹음의 경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도청자료를 취득하게 된 과정, 이 사건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보도의 목적·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도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과 통신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할 때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것이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보도행위가 정당행위로서 허용된다고 한다면 장차 국가기관 등이 사인 간의 통신이나 대화를 불법 감청·녹음한 후 자신의 존재는 숨긴 채 언론기관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불법 감청·녹음 등의 행위는 그것이 어떠한 명분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허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고, 그 결과물의 공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불법 감청·녹음 등의 유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불법 감청·녹음된 결과물이 이미 밖으로 유출되어 버린 상태에서 통신의 비밀 보호가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언론기관의 보도에 의한 공개행위의 위법 여부를 불법 감청·녹음 등을 행한 자에 의한 공개행위의 위법성과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다수의견의 위와 같은 우려는 앞서 우리가 제시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상당 부분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오히려 이 사건 보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언론기관에 대하여 그 부여된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덧붙여 우리는 이 사건 도청자료가 국가기관이 자행한 불법 녹음의 산물임에 주목한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불법 감청·녹음 등을 저지른 뒤 그 결과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탓에 함부로 유출되어 언론기관이 이를 위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사인이 불법 감청·녹음한 통신비밀을 공개한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한다. 즉, 불법 감청·녹음 등을 자행한 국가가 그것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언론기관의 공개행위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그 결과물의 공개로 침해되는 통신비밀의 주체는 국가기관이 아닌 불법 감청·녹음된 통신 또는 대화의 당사자이므로 이들의 통신의 비밀 보호에 대한 이익이 비교·형량의 대상이 되나, 구체적인 이익형량 과정에서 불법 감청·녹음 등의 주체도 그 고려 요소가 됨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보도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보도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정당행위의 의미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수의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반대하는 취지를 밝힌다.

[판례 2]

심층 취재·분석하는 시사보도프로그램은 보통의 뉴스프로그램과 달리 신속성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므로 언론사의 주의의무 더욱 필요

“방송보도 내용이 이 사건과 같이 해외에서 발생한 사안인 경우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보도된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방송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중략) 이 사건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취재한 후 그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 내용을 방송하는 시사보도프로그램으로서 보통의 뉴스프로그램과는 달리 신속성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1. 5. 19. 선고

사 건 : 2010가합6063 손해배상(기)

원 고 : 황OO

피 고 : 한국방송공사 외 3인

변론종결 : 2011. 4. 14.

판결 선고 : 2011. 5. 19.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 한국방송공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방송되는 ‘추적 60분’ 정규방송 프로그램의 말미에, 정정보도문을 보도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이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 이민 알선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KBS 2TV에서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는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공사의 소속 직원이다.

나. 원고 운영 업체의 취업이민 프로그램 운영

1) 국가직종분류코드(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code, 이하 ‘NOC 코드’라 한다)는 직종마다 4자리의 코드를 부여하는데 그 중 두 번째 숫자가 스킬 레벨(skill level)을 의미한다. NOC 코드에서는 직무의 난이도를 스킬 타입(skill type) 0, 스킬 레벨 A, B, C, D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2) 캐나다에서는 NOC 코드상에서 스킬 타입 0나 스킬 레벨 A, B에 해당하는 직종은 이민신청 자격을 주고 스킬 레벨 C, D에 해당하는 직종은 이민 신청 자격을 주지 않는다.

3) 원고는 이민희망자를 대상으로 근로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시켜 숙련직 노동자로 노동시장 영향 평가서(Labour Market Opinion Confirmation, 이하 ‘LMO’라고 한다)를 받아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WPT 프로그램을 고안하였고, 원고 운영 업체와 소외 주식회사 OO이주공사(이하 ‘OO이주공사’라 한다)는 OO이주공사에서 고객들을 모집하고, 원고 운영 업체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고객들에게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OO이주공사에서는 취업비자를 취득한 사람들의 영주권신청과 이후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4) 원고는 2006년경, 이민희망자들은 원고가 알선하는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목수로서 스킬 레벨 B로 취업비자를 받는다는 내용의 WPT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제1 과정’이라 한다)을 통하여 캐나다 취업이민 희망자를 모집하였는데, 원고는 건설노동자 프로그램의 참여자 13명(이하 ‘이 사건 제1 참여자들’이라 한다)에게 목수로서 스킬 레벨 B인 LMO를 받아 주겠다고 약속하고, D. E. Lumber라는 트러스(Truss) 제작 회사에 취직을 알선해 주었으며 수수료로 1인당 8,800,000원씩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위 참여자들이 받은 LMO는 스킬 레벨 C였고, 위 참여자들은 캐나다 이민성(CIC)으로부터 여권을 압류당하고, 추방명령을 받았다.

5) 또한 원고는 2007년 초경 캐나다의 직업기술대학교인 세이트(SAIT)에서 9주간 교육을 받은 다음 교육 수료자들에게 스킬 레벨 B인 라인 쿡(Line Cook)으로 취업비자를 받게 해준다는 내용의 WPT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제2 과정’이라 한다)을 통하여 캐나다 취업이민 희망자를 모집하였다. 요리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은 16명(이하 ‘이 사건 제2 참여자들’이라 한다) 및 안OO(가명 양민영) 등 17명으로서 그 중 안OO은 위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이 사건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토론토에 트럭운전사로 취업하러 간 피해자들의 사례이고, 두 번째 부분은 캘거리에서 원고 운영 업체를 통하여 건설노동자와 요리사로 취업하러 온 사람들에게 대한 내용이며, 세 번째 부분은 관계당국인 토론토 총영사관을 취재한 내용이다.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이하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이라 한다)으로서 분량은 약 15분 정도이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입부분 : 보통 독립 이민의 자격이 되지 않은 경우 그 점수를 보충하기 위해 취업비자를 선택하는데,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경우 보통 10점이 추가되고, 여기에 기술 수준이 높은 직종일 경우 가산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직종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노린 또 다른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 건설노동자 부분 : 원고가 13명의 이민희망자들에게 WPT 프로그램을 통하여 스킬레벨 B로 취업비자를 받아주기로 하였는데, 이민 희망자들이 받은 LMO는 스킬 레벨 C였고, 이민희망자 전원이 원고가 시켜서 한 무보수 현장실습으로 인하여 여권을 압류당하고 추방명령을 받았다.

3) 요리사 부분 : 원고는 불법으로 규정된 현장실습을 직업학교 교육으로 대체하여 OO이주공사와 함께 다시 WPT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직업기술대학교인 세이트(SAIT)에서 9주 교육을 받아 스킬 레벨 B인 라인 쿡(Line Cook)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1년 내에 영주권 신청까지 한다는 내용의 이민프로그램이다.

2. 이 사건 소 중 정정보도청구부분에 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는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된 2007. 3. 29.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정정보도청구부분은 위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정정보도청구의 근

거는 민법 제764조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책임의 발생

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07. 3. 28. 이 사건 방송을 통하여 원고 및 원고 운영 업체가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수십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여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캐나다로 입국하게 하여 단기간의 교육을 이수할 것을 종용하고 있으나 취재 결과 이는 사기임이 분명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의 특정 여부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원고의 인터뷰 장면이 원고의 얼굴과 음성이 그대로 드러난 채 방송되었으므로,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에서 피해자는 원고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여부

먼저, 방송제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목은 ‘취업이민사기 실태보고, 캐나다에서 떠도는 아버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제목 자체로 이민 알선 업체 대표인 원고가 이민 신청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또한 방송내용 및 구성에 관하여 보면, 마치 원고가 무허가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민 신청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다음 취재진에 의하여 책임을 추궁 당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변명을 하는 것처럼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방송 제목, 원고측 반론의 배치 방법 등 이 사건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전체적인 문맥과 취

지와 일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제1 과정과 이 사건 제2 과정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원고가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는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거나 이를 표현한 것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한 피고 김OO, 구OO과 원고로부터 방송보류 요청을 받았으나 정확한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프로그램을 편성한 피고 조OO 및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피고 공사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제작·편성 및 방송을 함으로써 원고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공사는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보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위법성 조각사유 항변에 관하여

1) 피고들의 항변 요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취업이민 피해 사례를 집중 조망하고 이주 대행업체의 무책임한 영업태도를 고발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제작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가사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음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2)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

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3) 이 사건 프로그램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취업이민 피해 사례를 취재하여 감독기관의 법제도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취업이민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회문제를 다룬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방송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의 내용이 진실에 합치하는지 여부

가) 건설노동자 부분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증거, 증인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건설노동자 과정에 참여한 이민 신청자들에게 스킬 레벨 B로 LMO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스킬 레벨 C인 LMO가 나왔고, 원고가 알선한 업체가 트러스를 제작하는 회사이며, 캐나다 이민국이 이 사

건 제1 참여자들에 대하여 D. E. Lumber에서의 현장 실습을 이유로 추방명령을 내렸다는 정황만으로는, 이 사건 제1 과정에 하자가 있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D. E. Lumber에서 이 사건 제1 참여자들이 수행하게 될 업무가 스킬 레벨 C임에도, 이 사건 제1 참여자들에게 스킬 레벨 B로 LMO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위 참여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 중 건설 노동자 부분의 내용은 진실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요리사 부분

비록 피고 김OO가 취재한 변호사가 이 사건 제2 과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고, 세이트(SAIT) 관계자가 이 사건 제2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수수료증이 나온다고 하였으며, OO이주공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영주권 취득까지 1년’이라는 광고를 하였지만 이 사건 제2 참여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한 기간이 1년이 넘어간다는 등의 정황만으로는, 이 사건 제2 과정을 통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업비자를 얻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2 과정으로는 스킬 레벨 B인 라인 쿡(Line Cook) LMO를 취득할 수 없고, 영주권도 1년 이내에 취득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제2 참여자들에게 1년 이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 중 요리사 부분의 내용은 진실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상당성의 판단 기준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더구나, 방송보도 내용이 이 사건과 같이 해외에서 발생한 사안인 경우 일반 시청자들로서는 보도된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방송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방송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보도대상 및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진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취재한 후 그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 내용을 방송하는 시사보도프로그램으로서 보통의 뉴스프로그램과는 달리 신속성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OO는 이 사건 제1 참여자들의 주장 및 그들이 소지한 추방명령서, 안OO의 주장, 캐나다 현지 변호사의 의견, 세이트(SAIT) 관계자와의 취재내용,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이민관에 대한 취재 내용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의 내

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OO가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가 피고 김OO의 취재에 응하면서 건설노동자 과정 참여자들에게 스킬 레벨 C인 LMO가 발급된 것에 대하여 자신은 고용주 및 이 사건 제1 참여자들로 부터 해임 당하여 더 이상 LMO 발급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고, 고용주가 스킬 레벨 C로 신청하여 LMO가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피고 김OO는 원고가 해임되었는지 여부와 원고가 직접 LMO를 스킬 레벨 C로 신청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제1 참여자들에게만 이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용주인 D. E. Lumber 측과 LMO를 발급한 서비스 캐나다 측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② 원고가 D. E. Lumber에서 이 사건 제1 참여자들이 하는 업무가 스킬 레벨 B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OO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1 참여자들의 주장만을 참고하고 그 밖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원고의 주장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

③ 안OO은 비록 이 사건 제2 과정에 참가신청을 하였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는 전혀 참여한 바가 없었던 사람이었던 점에서 안OO의 주장내용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피고 김OO는 이 사건 프로그램 방송 이전에 이 사건 제2 참여자들을 취재하여 이 사건 제2 과정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④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 내용에 의하더라도 OO이주공사가 피고 김OO에게 이 사건 제2 과정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검증을 하지 못하였는데 하자가 있으면 이를 캐나다에 가서 확인하겠으니 어떠한 문

제점이 알려 달라고 물었으나 피고 김OO는 이에 대하여 정확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적하지 못하였다.

⑤ 원고는 2007. 3. 7. 및 같은 해 3. 8. 피고 김OO와 캐나다에서 인터뷰할 당시에 이 사건 요리사 교육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한 LMO가 곧 나올 것이므로 위 과정이 종료되는 2달만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이전에 제작진에게 위 참여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LMO가 나왔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으므로, 피고 김OO는 이 사건 프로그램 방송 이전에 위 팩스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추가적인 취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4.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가. 손해배상

1) 재산상 손해

원고는 OO이주공사와 진행하던 프로그램에 따른 기대이익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과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과의 프로젝트 파기로 인하여 상실한 수익에 해당하는 손해액 등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13,7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신적 손해(위자료)

원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배상액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제목과 내용,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어구, 방영 시점, 방영 시간, 피고들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의 원고의 특정 정도, 피고 공사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

1) 정정보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보면, 위 금전배상만으로는 원고가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는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피고 공사에게 정정방송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정정 보도문의 내용 및 방송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원고 부분 방송이 방송된 시간 및 비중, 정정 보도문의 글자 수, 정정보도의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공사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처음 방송되는 ‘추적 60분’ 프로그램 말미에서, 화면 상단에 통상의 뉴스 보도의 제목과 같은 글자 크기로 ‘정정 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는 통상의 뉴스 보도와 같은 글자 크기로 정정 보도문 기재 내용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위 정정 보도문 기재 내용을 원래의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송하도록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2) 간접강제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 공사가 위 1)항의 작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원고의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만

약 피고 공사가 위 1)항의 작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공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1)항의 ‘추적 60분’ 방송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각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게 함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편집자주-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원문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일본판례]

감시카메라(CCTV)로 점포내의 고객을 촬영한 행위와 촬영된 영상을 보도기관에 제공, 공표하게 한 행위가 불법행위법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점포에 들어오는 고객의 개별적 승낙을 받지 않고 상품을 선정하거나 구입하는 모습을 무차별적으로 촬영하게 되며, 따라서 고객의 상기 인격적 이익 및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우려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 점포 내에서 손님을 촬영하고 그 화상이 보도기관에 제공되어 공표되는 행위가 불법행위법상 위법인지의 여부는, 촬영의 목적, 필요성, 방법 및 촬영된 화상의 관리방법, 제공목적, 제공의 필요성, 제공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된 화상을 공표당하지 않을 이익과 공표해야 할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상기 인격적 이익 및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사회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 고 : 故 고오노타로(甲野太郎)의 소송승계인

고오노하나코(甲野花子)

피 고 : 유한회사Y1,

동 대표이사 오토야마이치로(乙山一郎)

주식회사Y2,

동 대표이사 헤이카와지로(丙川二郎)

대상사건 : 도쿄지법 2008(㉔) 제13227호

사 건 명 : 손해배상등 청구사건

연월일등 : 2010. 9. 27 민사제6부 판결

재판내용 : 일부인용 · 항소

변론종결 : 2010. 7. 26

참조조문 : 민법 709조 · 710조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Y2는 원고에 대해 110만엔 및 이에 대한 2008년 5월 25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불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Y2에 대한 다른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유한회사Y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에게 발생한 비용의 3분의1과 피고 유한회사Y1에게 발생한 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에게 발생한 다른 나머지 비용과 피고 주식회사Y2에게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10등분하여 그 90%를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이 판결은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가 있다.

사실 및 이유

1. 청구

1. 피고 유한회사Y1은, 원고에 대해 550만엔 및 이

에 대한 2007년 7월 4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불하라.

2. 피고 주식회사Y2는, 원고에 대해 1,100만엔 및 이에 대한 2007년 7월 4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불하라.

2. 사안의 개요

본건은 저명인사인故 고오노타로(2008년 10월 10일 사망 · 이하「故 고오노」로 한다)의 상속인인 원고가 ①피고 유한회사 Y1이 경영하는 편의점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故 고오노가 절도하는 영상이 촬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도기관에 당해 영상과 관련한 동화(動畵)파일을 제공하여故 고오노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고, ②상기 감시카메라에 접속하는 레코더(recorder) 본체 등을 상기 편의점에 납입, 설치한 피고주식회사Y2가 상기 동화파일을 기본으로 상기 편의점내에서의故 고오노의 거동을 방영한 주식회사「후지텔레비전」(이하「후지TV」로 한다)의 프로그램 일부를 발췌, 편집한 동화를 자사 홈페이지에 업로드(upload)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故 고오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기 프로의 영상 및 내레이션 중故 고오노가 촬영된 부분을 편집한 다음 여기에 자사의 감시카메라의 성능 등에 관한 내레이션을 추가한 DVD를 작성, 전시회에서 이를 방영했는가 하면 상기 DVD를 배포하는 등故 고오노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하여 피고 Y1사에 대해 위자료 500만엔과 변호사비용 50만엔을 합쳐 합계 550만엔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 후인 2007년 7월 4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민법에 정한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청구하는 한편 피고 Y2사에 대해서도 위자료 1000만엔과 변호사비용 100만엔을 합쳐 합계 1,100만엔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 후인 2007년 7월 4일부터 지불이 끝날 때까지 민법에 정한 연 5부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불을 청구하는 사안이다.

1. 전제가 되는 사실 (증거를 제시한 사실 이외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1) 당사자

가. 故 고오노는 이른바 「B사건」으로 저명인이 된 인물이다. 원고는故 고오노의 부인이다.

나. 피고 Y1사는 편의점의 경영 등을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 Y1사는 2007년 3월 당시 편의점인「A 平塚高村店(A 히라츠카다카무라텐)」(이하「본건 점포」로 한다)을 경영하고 있었다. 오토야마이치로(乙山一郎) (이하「오토야마」로 한다)는 당시 피고 Y1사의 대표이사였다.

다. 피고 Y2사는 방법감시 시스템기기의 개발,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감시카메라의 존재

본건 점포에는 2007년 3월 당시 합계 16대의 감시카메라 (이하「본건감시카메라」로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본건감시카메라에 접속하는 레코더 본체 및 액정 모니터는 피고 Y2사가 2006년 12월 15일 본건 점포에 납입하여 설치한 것이다.

본건감시카메라에 의한 촬영상황은, 본건 점포내에 있는 사무실에 설치된 하드디스크에 수시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실시간으로 하나의 모니터에 선택한 하나의 감시카메라의 영상을 비추게 한다가, 필요에 따라 2~16분 비율로 복수의 감시카메라의 영상을 하나의 모니터로 비출 수 있게 했으며, 또한 보존된 영상을 차후에 같은 방법으로 재생하는 것도 가능했다.

(3) 사실경과

가. 故 고오노는 2007년 3월 17일 오후 4시 30분경 본건 점포를 방문, 캔커피를 구입하고, 서적 복사 등을 한 후 돌아갔다.

나. 오토야마는, 2007년 3월 19일 본건 점포의 점원으로부터 진열상품을 점검한 결과 DHC의 부록물 6점(판매가격 합계 3,632엔, 이하 「본건상품」이라 한다)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 동월 20일 본건감시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재생했다. 그 결과 오토야마는 故 고오노가 본건상품을 절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동월 30일 가나가와현 히라즈카(平塚)경찰서에 피해계를 제출했다.

그 후 故 고오노는 동월 17일 본건 점포내에서 본건상품을 절취했다는 피의사실에 의해 동년 4월 5일 체포되어, 동월 13일 요코하마 지방법원 오타와라지부(小田原支部)에 기소되었다(이하 기소에 관련한 형사사건을 「본건형사사건」으로 한다).

다. 오토야마는, 2007년 3월 중순 경 「후지TV」와 계약을 체결한 제작회사의 기자인 하루노아키오(春野明夫)에게 본건감시카메라에 수록된 故 고오노의 동월 17일의 본건 점포내에서의 일련의 거동을 촬영한 영상과 관련한 동화파일(이하 「본건동화파일」로 한다)을 제공했다.

라. 「후지TV」는 2007년 4월 6일 본건동화파일을 기본으로 하여 故 고오노의 동월 17일의 본건 점포내에서의 일련의 거동을 촬영한 영상을, 「とくダネ!(특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故 고오노의 절도사건」이란 제목으로 방영했으며, 「슈퍼뉴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검증, 어른의 절도」라는 특집(이하 「본건특집프로」로 한다)을 방영하기도 했다. 그 때 「후지TV」는 본건동화파일을 편집, 가공하여 故 고오노를 특정할 수 있는 형태로 故 고오노의 본건 점포내에서의 거동을 방영했다. 또한 다른 각 민간방송사도 연일 「후지TV」로부터 제공받은 본건동화파일을 기본으로 하여 故

고오노를 특정할 수 있는 형태로 故 고오노의 본건 점포내에서의 거동을 반복하여 방영했다.

마. 피고 Y2사는 본건특집프로를 녹화하여 이를 편집, 다음과 같이 사용했다.

(가) 홈페이지에 업로드

피고 Y2사는 2007년 4월 12일부터 동년 7월 26일까지 본건특집프로의 일부를 발췌, 편집한 동화(이하 「본건홈페이지동화」로 한다)를, 「2007. 4 후지TV(슈퍼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라는 등으로 링크(link)를 하고 자사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하도록 했다.

본건홈페이지동화는, 전체 길이가 1분 48초이며, 그 태반은 본건특집프로에서 피고 Y2사의 방법기기의 소개 및 실험부분을 발췌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첫머리의 「고오노 용의자의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방법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이쪽 회사입니다」라는 리포터의 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을 뿐만 아니라 화면 오른쪽 상단의 「왜 증가... 어른의 절도 고오노 용의자 “범행의 순간”」이라는 텔롭(telop - TV에 투사·삽입되는 글자나 사진)도 그대로 표시되었다.

(나) DVD의 방영 및 배포

피고 Y2사는, 본건특집프로의 영상 및 내레이션 중 故 고오노가 촬영된 부분을 편집하여 여기에 자사 감시카메라의 성능, 실적 등에 관한 내레이션을 첨부한 DVD(이하 「본건DVD」로 한다)를 작성했다. 본건 DVD의 전체 길이는 8분 10초에 이르며, 故 고오노가 본건 점포내에서 상품을 손에 들고 안쪽으로 들어가 윗도리에 손을 집어넣는 동작이라든가 그 후에 계산대로 향하는 동작 등 故 고오노의 본건 점포 내에서의 일련의 거동들이 기록되어있다.

본건DVD에서는 故 고오노의 얼굴과 텔롭의 이름 부분 일부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이름을 읽는 내레이션의 일부에 「ピ-音(삐-음)」이 들리기도 했으나, 본건특집프로의 첫머리에는 「B재판에서 주

목을 끝냈던(빠-) 고오노 용의자가 편의점에서 절도한 혐의로 어제 체포되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오노 용의자 “범행의 순간”」이라는 텔롭도 삭제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

피고 Y2사는 2007년 7월 4일부터 3일간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된 「OSEC 제2회 Office Security EXPO」 전시회(이하 「본건전시회」로 한다)에서 피고 Y2사의 부스(booth)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40인치 화면으로 본건DVD를 방영, 열람시키는 한편 본건DVD를 배포했다. 또한 피고 Y2사의 세일즈맨은 영업 관계자들에게 본건DVD를 배포하기도 했다.

(4) 상속 등

가. 故 고오노는 2008년 10월 10일 사망했다.

나. 요코하마 가정법원 오타와라지부는 故 고오노가 사망한 후 본건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내렸다.

2. 쟁점 및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Y1사가 본건 점포내에서 故 고오노를 본건 감시카메라로 촬영하고 본건동화파일을 보도기관에 제공한 행위가 故 고오노의 초상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법상 위법인지의 여부

〈원고의 주장〉

가.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에 관하여

(가) 사람은 함부로 자기의 용모 등을 촬영 또는 공표 당하지 않도록 법률상 보호되는 인격적 이익(초상권)을 갖고 있다. 또 초상은 개인에 관한 정보의 중요한 일부로서 용모 등을 함부로 촬영당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촬영내용이 녹화된 기록의 보관, 이용, 폐기, 삭제 및 제공 등 정보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법적 보

호를 받는다. 특히 화상이나 영상의 디지털처리기술과 정보전달기술이 발달된 현대에서는 한번 촬영된 초상은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져나갈 위험성이 있으므로, 촬영된 녹화정보 등의 이용행위 및 제공행위의 적법성 판단이 엄격해야 하며, 촬영행위 자체의 적법성 판단에서도 촬영 후의 녹화정보 등의 취급상황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겠다.

(나) 또한 어느 누구도 통상 공개를 바라지 않는 정보를 수집당하거나 공표, 공개되지 않도록 법률상 보호받을 인격적 이익(프라이버시권)을 갖는다. 프라이버시권도 정보를 취득당하는 장면뿐만 아니라 보관, 이용, 폐기, 삭제, 제공 등 정보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법적보호를 받는다.

나. 촬영행위에 의한 초상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하여

사인(私人)에 의한 촬영행위는, 종래로부터 하등의 법령상 근거도 없고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피촬영자로서는 그 용도에 대한 불안, 고통 등이 크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반시민들에게도 고성능의 촬영기기가 보급되고 기록의 보존기술 및 전달기술이 발달하여 정보 누설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사인에 의한 초상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공권력에 의한 것보다 뒤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시카메라 등에 의한 무차별 촬영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①촬영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②촬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③촬영의 방법이 정당해야 하고 ④녹화한 기록의 이용, 보관, 말소, 폐기 등의 관리가 적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피고 Y1사의 대표이사였던 오토야마는, 절도 등의 범죄예방 및 고객과 종업원의 안전 확보 목적으로 본건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면서도 방법비디오의 취급에 대해서는 종업원들에게 추상적인 주의를 환기

시켰을 뿐 상기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으며, 방법비디오의 조작에 관한 규칙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촬영방법과 방법비디오 관리에 필요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 Y1사가 본건감시카메라로 故 고오노를 촬영한 행위는 동인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 제공행위에 의한 초상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하여

상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촬영 및 녹화행위 자체가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녹화기록의 이용행위가 촬영 및 녹화의 목적을 이탈(逸脫)하였을 경우에는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를 본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 Y1사는 본건동화파일을 「후지TV」와 계약을 체결한 제작회사의 기자에게 제공했는데, 이러한 제공행위는 본건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본건 점포내의 모습을 촬영 및 녹화하는 목적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목적외의 행위이며, 「후지TV」는 故 고오노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피고Y1사의 주장〉

가.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에 관하여

초상권은 사람의 용모 등을 촬영하는 행위를 그 침해유형의 전형(典型)으로 상정(想定)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권은 정보의 공개장면을 그 침해유형의 전형으로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감시카메라로 故 고오노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초상권의 침해여부를 밝히는 관점에서 검토하면 될 것이고, 본건동화파일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故 고오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부를 밝히는 관점에서 검토하면 될 것이다.

나. 초상권 침해에 관하여

사람은 함부로 자기의 용모 등을 촬영당하지 않도록 법률상 보호되는 인격적 이익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용모 등을 승낙 없이 촬영하는 것이 불법행위법상 위법이 되는지의 여부는 ①피촬영자의 사회적 지위 ②촬영된 피촬영자의 활동내용 및 촬영장소 ③촬영의 목적 ④촬영의 양태(樣態) 및 촬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촬영자의 상기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사회생활상 수인(受忍)한도를 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만 한다.

이를 본건에 비추어 보면, ①故 고오노는 이른바 「B사건」으로 저명한 인물이 되었으며, 해설자로 TV 출연을 하기도 하고, 영화프로듀서로 활동하는 등 유명인이라는 점은 위법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할 고려요소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②본건은 본건 점포내에서의 故 고오노의 범죄행위(절도)를 촬영한 것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행사에 참가한 사람을 촬영한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한층 더 위법성이 부정되어야만 한다. 더욱이 ③본건에서의 촬영 목적은 편의점의 영업상 필요 불가결한 범죄의 방지나 예방에 있으며 ④상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본건 점포내의 구석구석까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 Y1사는 본건 점포의 입구에 「방법카메라 설치 중」이라는 벽보를 붙이기도 하고, 본건감시카메라의 대부분을 고객의 시야에 들어오는 장소에 설치하는 등 본건감시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음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이상에 의하면 피고 Y1사가 본건 점포내에서 故 고오노를 본건감시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故 고오노의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법상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하여

(가) 원고는 피고 Y1사가 故 고오노의 어떠한 정보

를 공개한 것으로 해서 故 고오노의 사생활상의 평온(平穩)에 피해가 있었다는데 대해 아무런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故 고오노의 외모, 신체적 특징, 본건 점포내에서의 故 고오노의 행동 등이라고 좋게 해석했다고 하더라도, 故 고오노는 매스미디어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었던 유명인이고, 그의 외모나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또한 본건 점포를 방문하여 캔커피를 구입하고 서적을 복사한 후 점포를 나갔다는 故 고오노의 본건 점포내에서의 행동이 일반인의 감성(感性)을 기준으로 할 때, 타인에게 알려짐으로서 사생활상의 평온을 해할 만한 정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더구나, 가령 故 고오노가 본건 점포내에서 절도를 했다는 것이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는 피고 Y1사의 보도기관에 대한 본건동화파일의 제공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故 고오노가 2008년 4월 5일 절도죄로 체포됨으로써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 의하면 피고 Y1사의 보도기관에 대한 본건동화파일의 제공행위는, 애초부터 제공의 대상이었던 본건동화파일에 故 고오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이므로,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나) 설령, 피고 Y1사가 보도기관에 제공한 본건동화파일 속에 故 고오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하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인의 감성을 기준으로 상기 제공행위는 사회생활상 수인한도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a. 본건동화파일에 포함된 정보의 비닉성(秘匿性)은 극히 희박하며, 당해 정보는 故 고오노가 체포된 사실에 의해 공표된 절도죄의 피의사실에 부수(附隨)된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상기와 같이

원고는 본건동화파일 속의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여 故 고오노의 사생활상의 평온에 피해를 주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를 하지 않고 있다.

- b. 故 고오노는 본건 점포내에서의 행동이 본건감시카메라에 촬영되는 것을 인용(認容)하고, 본건 점포내에 들어와 행동을 한 결과 절도죄로 체포된 것이다.
- c. 피고 Y1사는 기자 하루노아키오(春野明夫)에게 신중하게 취급해 주도록 부탁하면서 본건동화파일을 제공한데 지나지 않으며, 그 이후의 보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상기의 제공 목적은 절도의 중요성을 사회일반에게 주지시킨다는 데 있었다. 그리고 오토야마가 「후지TV」에 대해 본건동화파일 사용을 허가한 것은, 2007년 4월 5일 故 고오노가 절도죄로 체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피고 Y1사가, 「후지TV」 이외의 보도기관에 대해 본건동화파일을 재생한 화상을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은 본건 점포의 주위에 몰려든 보도기관들을 퇴거시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또한 피고 Y1사는 「후지TV」를 위시한 보도기관들로부터 본건동화파일 제공에 따른 사례를 일절 받지 않았다.
- d. 故 고오노측이 상기 제공행위를 문제시하기 시작한 것은 피고 Y2사가 본건전시회에서 故 고오노의 절도 영상을 방영한 이후였으며, 절도사건이 보도된 후 약 5개월이 지나서였다.

(2) 본건홈페이지동화를 인터넷상에 업로드한 피고 Y2사의 행위가, 故 고오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또한 본건DVD를 방영 및 배포한 피고 Y2사의 행위가 故 고오노의 초상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법상 위법인지에 대하여

가. 명예훼손에 관하여

(가) 사실의 적시

본건홈페이지동화에는, 화면의 오른쪽 위에 「왜 증거... 어른의 절도 고오노 용의자 “범행의 순간”」이라는 텔롭이 표시되어, 「고오노 용의자 체포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방법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이쪽 회사입니다」라는 리포터의 발언도 흘러나오고 있다. 「고오노」라는 이름 등으로故 고오노가 특정되었으며, 「범행의 순간」이라는 기재는 「어른의 절도」라는 기재와 어울려서故 고오노가 절도를 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따라서 피고 Y2사는 본건홈페이지동화를 통해故 고오노가 절도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나) 사회적평가의 저하

절도는, 절도죄(형법235조)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반사회적 행위이므로,故 고오노가 절도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은 고오노의 품성, 덕행, 명성 및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것은 명백하다.

나. 초상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하여

(가) 전기와 같이 사람은 함부로 자기의 용모 등을 촬영당한다든가 공표되는데 대해 법률상 보호를 받을 인격적 이익(초상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DVD에는故 고오노가 본건 점포내에서 진열대 주위를 돌며 상품을 선별하면서 손으로 잡는 행위, 계산대 앞에 줄을 서는 모습, 클로즈업한 용모가 각각 촬영된 영상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 Y2사는 2007년 7월 4일부터 3일간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된 본건전시회에서 피고 Y2사의 부스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내장객들에게 40인치의 화면으로 본건DVD를 계속해서 방영, 열람시켜故 고오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 또한 피고 Y2사는 상기 내

장객들에게 본건DVD를 배포하는 한편 자사 제품의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 영업사원들을 동원, 영업관계자들에게 본건DVD를 배포함으로써故 고오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

(나) 또한 전기와 같이 모든 사람은 통상 공개를 바라지 않는 정보가 수집되어 공표, 공개되지 않도록 법률상 보호를 받을 인격적 이익(초상권)을 갖고 있다.

본건DVD에는故 고오노가 자택 근처의 본건 점포에서 상품을 고르기 위해 진열대 사이를 돌아다니고, 때로는 특정상품을 응시하면서 손으로 잡는 장면을 약 2분간에 걸쳐故 고오노를 뒤쫓듯이 촬영한 영상이 수록되어 있으며, 「오른손에는 캔커피, 왼손에는 부록물」이라는 등의 해설까지 붙여져 있다. 뿐만 아니라 본건DVD 첫머리에서는 「후지TV」의 아나운서가 본건특집프로에서 「B재판에서 주목을 끌었던(罽-) 고오노 용의자가 편의점에서 절도한 혐의로 어제 체포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영상을 사용하면서, 본건 점포내를 걷고 있는故 고오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절도 피해의 결정적 순간」등의 해설까지 붙여, 마치故 고오노가 본건 점포내에서 상품을 고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Y2사는 상기와 같이 2007년 7월 4일부터 3일간 개최된 본건전시회에서 피고 Y2사의 부스를 찾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40인치의 화면으로 본건DVD를 계속적으로 방영, 열람시켜故 고오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 또한 피고 Y2사는 상기 내장객들 뿐만 아니라 영업관계자에게도 본건DVD를 배포하여故 고오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

〈피고 Y2사의 주장〉

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Y2사의 불법행위는 ①피

고 Y1사가 본건 점포내에서 故 고오노를 본건감시카메라로 촬영한 후 본건동화파일을 「후지TV」에 제공한 사실 ②「후지TV」가 본건특집프로를 방영한 사실이 전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각 행위가 적법인 이상 피고 Y2사의 행위도 적법이라고 해야 할 것이므로 ①피고Y1사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 피고의 상기 촬영행위 및 제공행위는 모두 불법행위법상 위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 ②「후지TV」의 본건특집프로의 방영행위가 적법이라는 것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나. 명예훼손에 관하여

(가) 본건홈페이지동화에 사실의 적시가 있다면, 그것은 「왜 증가... 어른의 절도 고오노 용의자 “범행의 순간”이라는 텔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작성하여 본건특집프로를 방영한 것은 「후지TV」이며, 피고 Y2사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 Y2사가 본건홈페이지동화에서 상기 텔롭을 내보낸 것은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피고 Y2사에 의한 본건홈페이지동화의 업로드가 故 고오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후지TV」에 의한 본건특집프로의 방영에 의해 이미 故 고오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으므로, 본건홈페이지동화의 업로드에 의해 새로이 故 고오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동인에게는 손해의 발생이 없거나 또는 동인의 손해와 피고 Y2사의 상기 행위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다. 초상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하여

(가) 피고 Y2사는 본건DVD에서 故 고오노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삭제하고, 출연자나 내레이터가 故 고오노의 이름을 말하는 부분에서는 소음(消音)을 하는 한편 문자는 마스크(masking)으로 숨겼다. 분명히

「고오노 용의자 “범행의 순간”이라는 텔롭은 지워지지 않았으나, 당해 텔롭이 비춰진 것은 불과 한 순간이었다. 따라서 절도범으로 방영된 남성을 故 고오노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 Y2사에 의한 본건DVD의 방영 및 배포로 故 고오노의 초상권이 침해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한 손해는 「후지TV」가 본건특집프로를 방영한 시점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Y2사의 본건DVD 방영 및 배포에 의해 새로이 초상권 침해에 의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故 고오노의 손해와 피고 Y2사의 상기 행위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다) 본건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의 내용이 「누가 언제 어떠한 점포에서 무엇을 구입했으며, 구입하려고 했는지」또는 「절도를 한 전후의 영상이라는 인상을 갖게 하는 모습」이라는 정보라고 한다면, 당해 정보는 이미 본건특집프로가 방영된 시점에서 공개되었으므로 故 고오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의한 손해는 이미 그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Y2사에 의한 본건DVD의 방영 및 배포에 의해, 새로이 초상권 침해에 의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는 故 고오노의 손해와 피고 Y2사의 상기 행위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또한 「후지TV」가 본건특집프로를 방영함으로써 비공지성(非公知性)이 상실되었으므로 본건DVD의 내용은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故 고오노의 상기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3) 故 고오노가 입은 손해의 내용 및 액수

〈원고의 주장〉

가. 故 고오노는 피고 Y1사의 전기 초상권 및 프라

이버시권 침해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엔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Y1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변호사 비용은 50만엔이다.

나. 또한 故 고오노는 피고 Y2사의 전기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엔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Y2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변호사 비용은 50만엔이다.

더욱이 피고 Y2사는 저명인사인 故 고오노가 절도를 했다는 장면의 초상을 이용하면, 일반 사인(私人)의 초상보다 사람들의 눈을 끌기 쉽다는 점에 착안하여 故 고오노의 마이너스 이미지를 자신들의 상업목적에 이용한 것으로, 이러한 양태(樣態)는 극히 악질적이고 위법성이 크기 때문에 위자료의 증액 사유가 된다고 하겠다.

〈피고Y1사의 주장〉

부인(否認) 또는 다툼

〈피고Y2사의 주장〉

부인(否認) 또는 다툼

※ 원고는 피고 Y2사의 행위에 의해 故 고오노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않고 있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1. 쟁점(1) (피고Y1사가, 본건 점포내에서 故 고오노를 본건감시카메라로 촬영하여 본건동화 파일을 보도기관에 제공한 것이 故 고오노의 초상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법상 위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모든 사람은 함부로 자신의 용모 등을 촬영당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촬영된 화상(畫像)을 함부로 공표당하지 않을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인격적 이익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최고재판소 1969년 12월 24일 대법정판결, 최고재판소 2005년 11월 10일 제1소법정판결). 또한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생활상의 사실 또는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최고재판소 1995년 9월 5일 제3소법정판결, 2003년 3월 14일 제2소법정판결, 2003년 9월 12일 제2소법정판결). 다만 어떤 사람의 사생활상의 모습을 촬영하여 그 화상을 공표한 경우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상을 공표당하지 않을 이익과 공표해서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상기 인격적 이익 및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사회생활상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불법행위법상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를 본건에 비추어 검토하면, 본건감시카메라는, 본건 점포에 들어오는 고객의 개별적 승낙을 받지 않고 상품을 선정하거나 구입하는 모습을 무차별적으로 촬영하게 되며, 따라서 고객의 상기 인격적 이익 및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우려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 점포 내에서 손님을 촬영하고 그 화상이 보도기관에 제공되어 공표되는 행위가 불법행위법상 위법인지의 여부는, 촬영의 목적, 필요성, 방법 및 촬영된 화상의 관리방법, 제공목적, 제공의 필요성, 제공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된 화상을 공표당하지 않을 이익과 공표해야 할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상기 인격적 이익 및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사회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본건감시카메라에 의한 촬영에 관하여

가. 증거에 의하면, 2007년 3월 17일 오후 4시 30분경 故 고오노가 본건 점포내에서 상품을 들고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가 허리를 굽히고 손을 윗도리 호주머니에 넣는 동작이라든가 그 후 계산대로 향하는 움직임 등 일련의 거동 및 용모가 본건감시카메라에 촬영되었음이 인정되는 바, 일반인의 감성을 기준으로 할 때, 어떠한 점포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구입했는지, 또는 구입하려고 하는지는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생활상의 사실 또는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갖게끔 하는 영상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감성을 기준으로 할 때, 숨겨야만 할 사생활상의 사실 또는 정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밝혀지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대는 법적으로도 보호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감시카메라에 의해 故 고오노의 용모 등 초상과 관련된 인격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촬영되었을 뿐 아니라 프라이버시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도 촬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므로 피고 Y1사가 본건감시카메라로 故 고오노를 촬영한 것이 동인의 초상에 관련한 인격적 이익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불법행위법상 위법인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 Y1사는 A주식회사의 가맹점(franchisee)으로서, 1999년 「A秦野尾尻店」(A하타노오지리텐·이하「秦野尾尻店」으로 한다)을, 2005년에 본건 점포를 개점했다. 오토아마는 양 점포에 각각 책임자를 두고 자신은 이들 점포를 통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편의점을 개점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며, 피고 Y1사도 「秦野尾尻店」을 개점할 당시 프랜차이저(franchiser)인 A사로부터 감시카메라

설치를 전제로 개점 건적 등을 제시할 수 있었다.

편의점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절도 방지뿐 아니라 고객이나 종업원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며, 경찰로부터 요청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본건 점포내에는 16대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설치대수가 적었으나 피고 Y1사는 경찰의 권고로 증설했다. 또한 본건 점포에서는 경찰의 권고를 받아 감시카메라 대수 증설 뿐만 아니라 화상(畫像)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경하기도 하고 카메라를 24시간 작동하기도 했다.

피고 Y1사는 본건 점포에 본건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약 500만엔을 지출했다. 본건 점포에서는 2~3주간에 1건 정도의 비율로 절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절반 정도가 본건감시카메라의 영상을 근거로 범인이 검거되고 있다.

(나) 본건감시카메라는 고정되어 있어 특정 고객을 추적하여 촬영하는 일은 없다. 또한 피고 Y1사는 본건 점포 내외의 10개소 정도에서 감시카메라가 작동 중임을 알리는 벽보를 게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감시카메라의 대부분을 고객들이 보이는 위치에 설치해 놓고 있으며, 계산대 옆에는 감시카메라의 영상을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고 있다.

(다) 본건감시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1개월 정도 보존된 후에는 자동적으로 말소된다. 피고 Y1사에서, 촬영한 영상의 이용, 보관, 말소 및 폐기 등에 관한 규칙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 점에 관해 프랜차이저인 A사로부터 지도를 받은 일도 없었다. 더욱이 오토아마는 「秦野尾尻店」이나 본건 점포의 종업원에 대해, 본건감시카메라의 취급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실수로 지갑을 놓고 간 고객으로부터 본건감시카메라의 영상을 보여 달라는 요청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말라는 당부도 있었다. 또한 본건감시카메라의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자는, 오토야마 외에 본건 점포의 책임자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본건감시카메라의 매뉴얼은 종업원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아 종업원이 본건감시카메라의 영상을 녹화매체에 기억시켜 점포 밖으로 갖고 나가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 그런데 편의점은 보통 24시간 영업을 하며, 많은 상품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ATM(Automatic Teller Machine)을 설치하기도 하고, 공공요금의 지불을 대행하는 등 금전을 취급하는 수많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도나 강도 등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상기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본건 점포 내부를 촬영하는 목적은 절도나 강도 등의 범죄발생에 대처함과 동시에 절도 등의 범죄발생을 예방하는데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절도 등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카메라의 영상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녹화한 후 상당한 기간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상에 의하면 피고 Y1사가 본건 점포내에 본건감시카메라를 설치, 본건 점포내의 모습을 촬영하여 이를 녹화하는 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으며,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촬영방법을 보면, 본건감시카메라는 고정되어 있어 특정고객을 추적하여 촬영하는 일은 없다. 피고 Y1사는 본건 점포 내외 10개소 정도에 감시카메라가 작동중임을 알리는 벽보를 게시하고 있고, 카메라의 대부분이 고객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계산대 옆에는 감시카메라의 영상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본건 점포 주위에도 일용품 점포가 있어 본건감시카메라에 의해 촬영되는 것이 싫으면 다른 점포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본건 점포에 오는 고객은 본건감시카메라에 의

해 촬영되는 것을 승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여지가 있어 본건감시카메라의 촬영방법은 상당성을 갖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촬영된 화상의 관리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촬영된 화상은 1개월 정도 보존된 후 자동적으로 말소되고, 오토야마는 종업원들에게 감시카메라의 취급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본건감시카메라의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사람은 오토야마외에 본건 점포의 책임자로 제한했고, 본건감시카메라의 매뉴얼이 종업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종업원이 영상을 녹화매체에 기억시켜 반출할 수 없도록 한 상황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촬영된 화상의 관리방법도 상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원칙적으로는 촬영된 화상의 관리방법에 대한 매뉴얼 등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매뉴얼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화상의 관리방법에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라. 이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 Y1사가 본건감시카메라로 故 고오노를 촬영한 것은 사회생활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 아니며, 동인의 초상과 관련한 인격적 이익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법상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본건동화 파일의 제공에 관하여

가. 피고 Y1사는, 동피고가 보도기관에 제공한 본건동화파일에는 故 고오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전기 실시(說示)에 의하면, 2007년 3월 17일 故 고오노의 본건 점포내에서의 일련의 거동을 촬영한 감시카메라의 본건동화 파일에 故 고오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 Y1사의

상기 주장은 채용할 수가 없다.

나. 피고 Y1사가 보도기관에 본건동화파일을 제공한 것이故 고오노의 초상과 관련한 인격적 이익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법상 위법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증거 및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오토야마는 2007년 3월 중순경 「후지TV」와 계약을 체결한 제작회사의 기자인 하루노(春野)로부터, 「후지TV」의 보도프로인 「FNN 슈퍼뉴스」에서 최근 소매점에서 절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경종을 울리는 프로를 제작하고 있으니 감시카메라 영상의 제공 등 협력을 요청받고 가능한 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오토야마는 부록물의 납입개수에 대한 재고개수와 판매개수가 일치하지 않아 본건감시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동월 17일故 고오노가 절도하는 영상을 발견했다는 등의 내용을 동월 19일 본건 점포의 책임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보고받았다. 오토야마는 종업원에게 자신도 상기 영상을 확인할 것이므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떠들어대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오토야마는 다음날인 20일 본건 점포에 나가 상기영상을 확인하면서故 고오노가 절도하는 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 후 오토야마는 平塚(히라츠카)경찰서의 경찰관에게 상기영상을 보였는데故 고오노의 절도죄를 입증할 증거로 충분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오토야마가 하루노 기자에게故 고오노의 절도영상이 촬영되었음을 전하자 하루노는 해당 동화파일을 다른 절도영상의 동화파일과 함께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 오토야마는 하루노에게 동월 22일경 몇 건의 절도장면이 촬영된 본건감시카메라의 영상과 관련한 동화파일을 제공했다. 이 동화파일 중에는 동월 17일

의 본건 점포내에서의故 고오노의 일련의 거동을 촬영한 영상과 관련한 동화파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오토야마는故 고오노를 조사하기 전이므로 그의 영상을 신중하게 취급해 줄 것을 하루노에게 부탁했으며, 하루노는故 고오노가 체포되지 않는 한 당해 영상을 보도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라) 본건 점포 종업원들은 동월 30일 본건 점포를 찾은故 고오노에게 동월 17일에 본건 점포내에서 있었던 그의 행동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故 고오노는 「잃어버렸어」, 「나도 (중략) 매입한 것 중에서 몇 개 인가는 영수증이 없는 것도 있다」라는 발언만을 계속했다. 이어 오토야마가 추궁하자故 고오노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상품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오토야마에게 사죄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토야마는 동월 30일故 고오노가 동월 17일 본건 점포내에서 절도를 했다는 피해계를 히라츠카경찰서에 제출했다. 오토야마는 동일 본건 점포를 방문한 하루노에게故 고오노가 변명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본건감시카메라의 영상과 관련한 동화파일을 제공했다.

(마)故 고오노는 동년 4월 5일 이 사건과 관련한 절도죄로 체포되었다. 하루노는 동년 4월 5일 오후 5시경 오토야마에게 전화를 걸어故 고오노가 체포되었으므로 동일의「후지TV」의 저녁뉴스에 본건동화파일과 관련한 영상을 방영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오토야마는 이에 동의했다. 그 후「후지TV」 이외의 보도진이 본건 점포 앞에 몰려들어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고 인근에서도 클레임이 걸려오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그래서 오토야마는 보도진의 요청을 받아들여 동일 오후 9시경 기자회견에 응했다. 이 때 오토야마는 주식회사「TV아사히」기자로부터 「후지TV」가 갖고 있는 본건동화파일을 다른 방송국에도 제공해 주도록 주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후지TV」에 의뢰하여 다른 방송국에도 본건동화파일과 관련된 영상을 배신하도록 했다.

다. 전기와 같이 피고 Y1사가 본건 점포에 본건감시카메라를 설치한 목적은 절도나 강도 등의 범죄발생에 대한 대처와 함께 절도 등의 범죄발생을 예방하는데 있는 바, 상기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Y1사가 「후지TV」에 본건동화파일을 제공한 목적은 상기 설치목적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Y1사가 보도기관에 본건동화파일을 제공한 것이 불법행위법상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의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상기 관점에서 검토하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Y1사가 「후지TV」에 본건동화파일을 제공한 것은 편의점의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절도의 증가에 경종을 울리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점에서 본건감시카메라의 설치목적 등에 간접적으로나마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기인정사실에 더해, 본건동화파일에 관련한 영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 Y1사에게 있어서는 적어도故 고오노가 본건 점포내의 상품을 절도했다고 믿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동피고가 하루노 기자에게故 고오노가 절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라면서 본건동화파일을 제공한 것은 상기 목적에 따르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오토야마는 동월 22일경 하루노에게故 고오노의 영상을 신중하게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본건동화파일에 관련된 영상은故 고오노가 체포된 후 처음으로 방영되었다. 따라서 본건동화파일을 제공하는 방법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 Y1사가, 「후지TV」에서 다른 방송국에 본건동화파일에 관련한 영상을 배신하는 것을 승낙한 것도故 고오노가 체포된 후였으며, 사건보도

라는 공익에도 기여했을 뿐 아니라 보도기관들도故 고오노가 체포된 후에 그 사실을 보도했다.

라. 이상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피고 Y1사가 본건동화파일을 보도기관에 제공하여 이를 공표하게 된 것은, 사회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故 고오노의 초상과 관련된 인격적 이익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법상의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2. 쟁점(2)(피고 Y2사가 본건홈페이지의 동화를 인터넷상에 업로드한 행위는故 고오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그리고 피고 Y2사가 본건DVD를 방영 및 배포한 것이故 고오노의 초상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법상의 위법인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본건홈페이지 동화의 업로드에 관하여

전기 전제가 되는 사실(3)마(가) 기재와 같이 피고 Y2사는 2007년 4월 12일부터 동년 7월 26일까지 본건특집프로의 일부를 발췌, 편집한 본건홈페이지동화를 「2007.4 후지TV(슈퍼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라는 링크를 걸고, 자사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토록 했다.

본건홈페이지동화는 전체 길이가 1분 48초로 그 태반은 본건특집프로에서 피고 Y2사의 방법기기 소개 및 실험부분을 발췌하는 현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앞부분의 「고오노 용의자의 체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방법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이쪽 회사입니다」라는 리포터의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을 뿐만 아니라 화면 오른쪽 상단의 「왜 증가... 어른의 절도 고오노 용의자 「범행의 순간」이라는 텔롭도 그대로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상기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홈페이지동화는, 상기 리포터의 발언과 텔롭의 기재에 의해故 고오노가 절도를 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일반시청자의 보통의 주의와 시청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故 고오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Y2사가 본건홈페이지동화를 인터넷상에 업로드한 행위는故 고오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 Y2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동피고의 불법행위는 피고 Y1사가 본건 점포내에서故 고오노를 본건감시카메라로 촬영, 본건동화파일을「후지TV」에 제공하여 방영하게 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들 각 행위가 적법인 이상 피고 Y2사의 행위도 적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행위의 성립여부는, 행위자마다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피고 Y1사나「후지TV」의 행위가 적법이라고 해서 피고 Y2사의 행위가 당연히 적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Y2사의 상기 주장은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예를 들면,「후지TV」의 본건특집프로 방영이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피고 Y2사가 본건홈페이지동화를 업로드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 Y2사는,「왜 증가... 어른의 절도 고오노 용의자 “범행의 순간”」이라는 텔롭을 작성하여 본건특집프로를 방영한 것은 피고 Y2사가 아니고「후지TV」이므로 동피고가 본건홈페이지동화에 상기 텔롭을 올린 것은 사실의 적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기 텔롭을 작성하여 본건특집프로를 방영한 것이「후지TV」라고 하더라도, 본건홈페이지동화를 작성하여 이를 업로드한 것은 피고 Y2사이므로, 본건홈페이지동화에 상기 텔롭을 올린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동피고의 상기 주장은 이유가 없다.

더욱이 피고 Y2사는, 본건홈페이지동화의 업로드

가故 고오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후지TV」에 의한 본건특집프로의 방영에 의해 이미故 고오노의 사회적 평가는 저하되었으므로, 새로이 본건홈페이지동화에 의해故 고오노의 사회적평가가 저하되지는 않았으며, 동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인의 손해와 피고 Y2사의 상기 행위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후지TV」에 의한 본건특집프로의 시청자와 본건홈페이지동화의 시청자가 완전히 겹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본건홈페이지동화의 업로드에 의해 새로이故 고오노의 사회적평가가 저하되는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Y2사의 상기 주장도 이유가 없다.

(2) 본건DVD의 방영 및 배포에 관하여

전기 전제가 되는 사실(3)마(나) 기재와 같이 피고 Y2사는 본건특집프로의 영상 및 내레이션 가운데故 고오노가 비춰지고 있는 부분을 편집하여 여기에 자기 회사의 감시카메라의 성능과 실적에 관한 내레이션을 덧붙인 DVD(본건DVD)를 작성했다. 본건DVD의 전체 길이는 8분 10초에 달하며,故 고오노가 본건점포내에서 상품을 손에 들고 안쪽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허리를 굽히고 손을 윗도리에 넣는 동작이라든가 이어 계산대로 향하는 동작 등故 고오노의 본건점포내에서의 일련의 거동들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본건DVD에는故 고오노의 얼굴과 텔롭의 이름 부분의 일부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기도 하고, 이름을 읽는 내레이션의 일부에「빠-음(ピ-音)」이 섞여 나오고 있었으며, 본건특집프로 첫머리에서의「B 재판에서 주목을 끌었던(빠-) 고오노 용의자가 편의점에서 절도한 혐의로 어제 체포되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고오

노 용의자 “범행의 순간”이라는 텔롭도 지워져 있었다는 사실, 피고 Y2사가 2007년 7월 4일부터 3일간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본건전시회에서 피고 Y2사의 부스를 찾은 내방객들에게 40인치 화면으로 본건 DVD를 방영하여 열람토록 하는 한편 본건DVD를 배포한 사실, 피고 Y2사의 세일즈맨이 영업거래처에 대해 본건DVD를 배포한 사실 등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상기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DVD에는故 고오노가 본건 점포에서 상품을 선정한 후 이를 구입하려고 하는 모습 등이 비춰지고 있어 이를 본 사람들에게故 고오노가 본건 점포내에서 절도를 했다는 인상까지 주는 것이었으며, 전기 설시에 의하면 피고 Y2사는 본건DVD를 작성하여 이를 방영, 배포함으로써故 고오노의 초상과 관련한 인격적 이익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전기 전제가 되는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 Y2사는 자사 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본건DVD의 방영 및 배포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동피고에게는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또한故 고오노의 초상과 관련한 인격적 이익 및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사회생활상 수인한도 내라고 할 사정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 피고의 상기 행위는 불법행위법상 위법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 Y2사는, 본건DVD에서는故 고오노의 얼굴이 모자이크로 지워졌으며, 출연자나 내레이터가故 고오노의 이름을 밝히는 부분에서는 음성이 지워지고 문자는 마스크(masking)으로 숨겨졌다는 사실, 그리고「고오노 용의자 “범행의 순간”」이라는 텔롭은 지워지지 않았으나 당해 텔롭이 방영된 것은 불과 한 장면으로 순간적이었다는 사실을 들어, 절도한 남성을故 고오노로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건DVD의 영상에서는,故 고오노의 체형, 얼굴의 윤곽, 머리스타일과 색, 연령 등을 간취(看取)할 수 있으며, 피고 Y2사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고

오노 용의자 “범행의 순간”이라는 텔롭의 일부가 지워지지 않았고, 무엇보다도「B재판에서 주목을 끌었던(刪-) 고오노용의자가 편의점에서 절도한 혐의로 어제 체포되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었으며,「B재판에서 주목을 끌었던… 고오노」라는 정보까지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본건DVD의 영상을 본 사람들은 피촬영자가故 고오노라고 특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 Y2사의 상기 주장은 채용할 수가 없다.

또한 피고 Y2사는, 본건DVD의 방영 및 배포에 의해故 고오노의 초상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한 손해는「후지TV」가 본건특집프로를 방영한 시점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Y2사에 의한 본건DVD의 방영 및 배포에 의해 새로이 초상권 침해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든가 또는故 고오노의 손해와 피고 Y2사의 상기 행위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후지TV」에 의한 본건특집프로의 시청자와 본건DVD의 시청자가 완전히 겹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본건DVD의 방영 및 배포에 의해故 고오노의 초상과 관련한 인격적 이익이 새로이 침해되는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Y2사의 상기 주장도 이유가 없다. 피고 Y2사는, 본건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의 내용이「사람이 언제 어떠한 점포에서 무엇을 구입했는지 혹은 구입하려고 했는지」라는 정보 또는「절도를 한 전후의 영상이라는 인상을 갖게 하는 모습」이라는 정보라고 한다면, 당해정보는 이미 본건특집프로가 방영된 시점에서 공개된 것이므로,故 고오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의한 손해는 이미 그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건DVD의 방영 및 배포에 의해 새로이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의한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든가 또는故 고오노의 손해와 피고 Y2사의 상기 행위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후지TV」에 의한 본건

특집프로 방영으로 비공지성(非公知性)이 상실되었고, 본건DVD의 방영 및 배포에 의해 그 방송내용은 일반인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지 않은 사항은 아니었으므로, 故 고오노의 상기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가 아니라고 피고 Y2사는 주장한다.

그러나 상기와 같이 「후지TV」에 의한 본건특집프로의 시청자와 본건DVD의 시청자가 완전히 겹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므로, 본건DVD의 방영 및 배포에 의해 故 고오노의 프라이버시권이 새로이 침해되는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본건특집프로의 방영에 의해 본건DVD의 영상이 비공지성을 상실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명백해졌다. 따라서 피고 Y2사의 상기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쟁점(3) (故 고오노가 입은 손해의 내용 및 액수에 관하여 판단한다.)

상술한 바에 의하면 故 고오노는 피고 Y2사의 전기 명예훼손, 초상과 관련한 인격적 이익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 Y2사는, 저명인인 故 고오노의 절도 장면 초상을 이용하면 일반인의 초상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쉬울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故 고오노의 마이너스 이미지를 자신의 상업목적에 이용한 면이 있었다고 추인(推認)되는 사실, 본건홈페이지동화는 인터넷에서 약 3개월 만에 걸쳐 공개되어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 졌다는 사실, 본건DVD가 방영된 본건전시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다는 사실, 피고 Y2사는 본건전시회에서 적어도 본건DVD를 100매 가깝게 배포했으며, 영업 관계자에게도 본건DVD를 배포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기 전제가 되는 사실(3).라 기재와 같이 「후지TV」가 본건동화파일을 기본으로 한 영상을 방영한 후 다른 민간방송 각사에서도 연일

본건동화파일을 기본으로, 故 고오노를 특정할 수 있는 형태로 동인의 본건 점포내에서의 거동을 반복해서 방영했다. 따라서 故 고오노의 상기 영상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 Y2사는 故 고오노로부터 지적을 받은 후 본건홈페이지동화의 링크로부터 故 고오노의 영상을 즉각 삭제했으며, 그 후에는 당시의 URL을 직접 치지 않는 한 상기 영상을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는 사실 등도 인정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Y2사가 故 고오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지불해야 할 위자료는 100만엔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Y2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변호사 비용은 10만엔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4. 결론

이상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Y1사에 대한 청구는 다른 나머지 점에 대해 판단할 것까지도 없이 이유가 없으며, 또한 원고의 피고 Y2사에 대한 청구는 주문 계기(揭記)의 한도에서 이유가 있다(더구나 피고 Y2사의 불법행위는 각기 일련일체의 불법행위이며, 소장(訴狀)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부대(付帶)청구의 기산일은 소장 송달일의 다음날인 2008년 5월 25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판례타임즈』 No. 1343호, 153~166

■ 번역 : 한 동 원 (전 한국언론연구원장)

트위터 또는 트윗픽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저작자)가 게시한 콘텐츠의 재사용을 장려하고 허용한다는 이용자와 트위터 또는 트윗픽 간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제3자인 언론사가 해당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 원 고 : Agence France Presse
 - 피 고 : Daniel Morel
 - 제3당사자 : Getty Images(US), Inc. 등
 - 판 사 : William H. Pauley III
- (미 연방지방법원 뉴욕 남부지법)

원고 Agence France Presse(“AFP”)는 AFP가 피고 다니엘 모렐(Daniel Morel)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구한다. 이 사진의 피고 Morel은 AFP가 저작권법 및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미국상표법(Lanham Act)을 위반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AFP는 피고 Morel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미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각하해 달라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며,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I. 기초사실

1. 아이티지진 사진

Morel은 아이티에서 20년 넘게 사진을 찍어 온 전문 사진저널리스트이며, AFP는 전세계의 신문사 등 미디어에 사진을 제공하는 프랑스계 뉴스통신사이다. Morel은 2010년 1월 12일 아이티 대지진 발생 당시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Port au Prince)에서 지진의 참사를 촬영하였고, 아이티의 통신상황이 좋

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오후 인터넷 접속에 성공했다. Morel은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인 트위터와 트위터의 어플리케이션인 트윗픽(twitpic)에 “photomorel”이라는 아이디의 계정을 만들었다. 트위터 사용자가 올리는 게시물, 즉 ‘트윗’은 총 140자에 한정되지만, 트윗픽을 이용하면 사진을 업로드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트위터와 트윗픽은 미국의 서로 다른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로, 각기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트윗픽은 “트윗픽에 사진을 업로드하면 트윗픽 사이트 및 제휴 사이트에서 사진을 사용, 또는 배포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본다. 업로드된 모든 이미지 파일은 게시물을 올린 본래 소유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Morel은 트윗픽에 사진을 업로드한 후 트위터 계정에 “지진 사진 독점 공개”라는 트윗을 올리고 트윗픽 페이지를 링크시켰다. 사진 자체에는 저작권에 대한 아무런 공지가 없었으나 Morel의 트윗픽 페이지에는 사진 옆에 “Morel”, “by photomorel”이라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다. 또한 해당 트윗픽 페이지에는 “@2010 Twitpic Inc, All Rights Reserved”라고 공지되어 있었다. Morel은 인터넷에 사진을 게재하면서 지진 소식을 알리고, 저작권을 보호받으면서 사진에 대해 인정받고 보상받기를 원했다.

2. 언론의 사진 사용

Morel이 사진을 올린 후 도미니카 공화국 거주자인 리산드로 수에로(Lisandro Suero)가 해당 사진을 복사하여 자신의 트윗픽 페이지에 포스팅하고 “지진 사진 독점 공개, 원본 사진임”이라고 트윗 메시지를 올렸다. 그는 사진가도 아닐뿐더러 지진이 일어난 당시 아이티에 있지도 않았다. 또한 해당 사진이 Morel의 것이라는 점도 밝히지 않았다.

문제의 사진은 아이티 지진을 촬영한 최초의 사진으로, 미디어가 재빨리 행동에 들어갔다. 그날 저녁 미국 등 외국의 수많은 언론사들이 Morel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저작권을 사겠다고 연락해왔다. CBS에서는 기자 4명이 사진을 사겠다고 원작자임을 밝혀주겠다고 제안했다. 게다가 CNN에서는 5명이 사진을 칭찬하며 방송에 내보내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Morel이 사진을 올리고 한 시간도 채 안 되어 AFP의 사진 편집자인 빈센트 아말비(Vincent Amalvy)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해당 사진을 링크시켰다. 한 시간 후 Amalvy는 Suero가 올린 사진에 대해 질문하면서 그의 트위터 페이지를 포스팅했다. 오후 9시 41분경 Amalvy는 Morel에게 “사진을 갖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몇 분 후 Morel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AFP는 Suero의 트위터 페이지에 게시된 Morel의 아이티 지진 사진 13장을 다운로드받았다.

AFP는 “이미지 포럼”이라는 온라인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진을 판매, 배포하고 있다. AFP는 해당 사진을 이미지 포럼에 올린 후, 이미지 라이선스 업체인 Getty측에 제공했다. 쌍방의 계약에 따라 Getty사는 북미와 영국 지역에서 AFP의 사진을 독점 판매한다. Morel의 사진은 “AFP/Getty/Lisandro Suero”, 즉 저작권이 AFP와 Getty사에 있으며, 원작자는 Suero라는 크레딧을 붙인 채 배포되었다. Getty사는 Morel의 사진을 CBS와 CNN 등 여타 수많은 언론사에 배포했다.

Morel은 AFP와 Getty사가 제반 절차를 어기고 Suero가 원작자인지 여부 및 사진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AFP와 Getty사가 Suero가 아이티 사진을 찍었다고 믿을만한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고, Suero가 아이티에서 잘 알려진 사진작가인 자신의 사진을 “훔쳤

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월 12일 오후 5시 45분 CNN은 지진 소식을 보도하면서 Morel의 사진 7장을 방송에 내보냈다. Morel은 CNN이 자신의 트윗픽 페이지에서 사진을 다운로드받았다고 주장한다. 1월 13일 CNN의 앵커 앤더슨 쿠퍼(Anderson Cooper)는 Morel의 다른 사진도 추가로 보도했다. Morel은 CNN이 Getty사로부터 사진을 구매한 후 이를 제휴사인 Time사에 다시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1월 13일 오전 2시 06분 AFP 소속 직원이 Morel의 트위터 페이지에 “안녕하세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훌륭한 사진을 찍으셨군요. 저는 AFP에서 일합니다. 메일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Morel은 AFP가 이 시점에서, 또는 그 이전에 해당 사진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AFP가 이미지 포럼 및 각종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진을 삭제한 후 다른 제휴사에 사진 삭제를 요청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 후에 AFP의 직원들은 Morel에게 사진에 대해 문의하는 트윗을 여러 차례 올렸다.

1월 13일 오전 5시 30분경 AFP사는 원작자의 크레딧을 Suero에서 Morel로 변경하도록 내부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Getty사는 “AFP/Getty/Lisandro Suero”라는 크레딧을 표시한 사진을 각종 자선단체, 구호단체, 언론사 등에 배포하였고, AFP와 Getty사를 저작권자로 표시하였다.

1월 13일 CBS는 저녁뉴스시간에 Morel의 사진 중 4장을 허가 없이 보도하였다. 또한 웹사이트에 여러 장을 게재하였다. Morel은 CBS가 제휴사에 사진 사용을 허가해줬다고 주장한다. 해당 사진은 2010년 4월까지 CBS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었다.

3. 저작권 분쟁

Corbis, Inc(“Corbis”)는 Getty사의 경쟁사로서

Morel의 사진을 독점 판매하는 대행사이다. Corbis사는 Morel이 전송하는 사진에 대해 저작권을 가진다. 1월 13일 Morel은 사진을 Corbis사에 보냈고, Corbis사는 그날 오후 사진을 게재했다.

1월 14일 Corbis사는 Getty사에 메일을 보내 Morel의 사진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그 날 오후 AFP는 Morel을 원작자로 표시한 사진 8매를 삭제했다. 그러나 Suero가 원작자로 표시되거나 원작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진 5매는 계속 남아있었다. 그날 Amalvy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Daniel Morel 씨를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사용한 것이고, 지금 사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Corbis사보다는 우리가 사진 배포에 대한 우선권을 가집니다.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도 아닐 뿐더러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나한테 전화하라고 하세요.”

2010년 1월 22일 AFP는 해당 사진을 Corbis사에 전송했다. 그러나 Morel의 주장에 따르면 AFP와 Getty사는 크레딧을 변경하거나 사진을 삭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의 사진을 가져다 판매했으며, 그 결과 재정적 이익을 취득했으며, 게다가 AFP와 Getty사가 고객사를 감독하거나 권리침해에 대해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뉴욕타임스와 타임, USA Today, 베니티 페어, 보스턴 글러브, 워싱턴포스트지 등이 해당 사진을 보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010년 3월 1일 Morel의 대리인은 AFP사에 해당 사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과, 다른 고객사에도 사용 금지를 고지하도록 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또한 다른 뉴스사 및 복지단체 등에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이 Morel의 사진을 계속하여 내보내고, 심지어 Suero를 원작자로 표시한 사진을 내보내기도 했다.

II. 논의

1. 법적인 관점

소 각하신청을 판단하는 데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모두 사실이어야 하며 원고에게 유리한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실관계를 제시함에 있어 피고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동안의 판례와 일반 상식에 비추어 고려하여야 한다.

소 각하신청 사건 심리에 있어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기록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장에서 언급한 기록도 모두 참고하여야 한다. 또한 언급되지 않은 기록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기록의 용어와 효력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원고에게 반드시 필요한 문서이므로 재판시 고려하여야 한다.

2. 저작권에 대한 판단

A. 직접적인 침해(direct infringement)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피해자는 (1)유효한 저작물의 소유권과 (2)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 두 가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한다 할지라도 라이선스의 실재 여부가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는 주요한 쟁점이 된다.

AFP와 다른 언론사들의 주장은 (1)해당 사진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2)Morel과 트위터 간 라이선스 동의에 따라 사진을 사용한 제3의 수혜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Morel의 주장을 기각해야 한다면서 재판부가 트위터와 트윗픽의 이용약관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을 고려하더라도

이들에게 Morel의 사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저작권자가 계약 업체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라이선스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 본인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진다.

트위픽의 로그인 페이지는 이용자들에게 “‘allow’를 클릭하면 트위터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문구는 아래와 같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 콘텐츠를 게시함으로써 트위터는 전세계적 미디어 또는 유통사에 해당 저작물을 사용, 복제, 재생산, 수정, 출판, 전송, 게시 및 배포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참고 : 즉, 이용자의 트윗을 전 세계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콘텐츠의 소유권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트위터의 약관은 “트위터는 트위터와 제휴한 업체, 기관, 개인에게 해당 콘텐츠를 제공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의 재사용을 장려하고 허용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트위터의 약관은 캘리포니아 주법의 영향을 받고, 트위터는 델라웨어 주법의 영향을 받는다.

즉 트위터의 약관에 따르면, 콘텐츠를 사용할 권리를 트위터와 그 제휴사로 한정한 것이다. 또한 사진의 저작권이 “트위픽과 그 제휴사이트”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고는 이 약관에 의한 트위터나 트위터의 제휴사가 아니다. 게다가 트위터가 “콘텐츠의 재사용을 장려하고 허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용자들이 저작권

이 있는 포스팅을 재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AFP와 다른 언론사에 Morel의 사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

(2) 제3의 수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제3자의 수혜를 명확히 인정하는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이 철회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효력을 가진다. 계약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수혜자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계약 당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계약 서상 계약 주체가 수익을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면 제3자는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트위터의 약관에 따르면 Morel이 자신의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주체는 트위터의 제휴사와 2차 저작권자뿐이다. 그러나 AFP 및 다른 피고들은 트위터의 제휴사 또는 2차 저작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용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게다가 트위터가 “콘텐츠의 광범위한 재사용을 권장 및 허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트위터 사용자가 자신의 사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 Morel이 “트위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작권을 부여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애매할뿐더러 불충분하다. 따라서 AFP와 다른 기관들이 제3의 수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B. 기여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와 대위침해(vicarious infringement)

주된 침해자 외에도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침해 행위를 유발하거나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간접적인 침해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기여침해는 (1)침해를 조장하거나 돕는 개인적인 행위, (2)침해를 가능케 하는 기계나 물건을 제공하는 행

위이다. 대위침해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재정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행위자가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이다. AFP와 Getty사는 저작권을 갖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자체가 없었고, 따라서 기여침해행위를 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라이선스의 존재 여부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 게다가 AFP와 Getty사가 해당 사진이 Morel의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면서 권리를 침해했고, 제3자에게 넘겼다는 Morel의 주장으로 볼 때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

대위침해행위와 관련하여 Morel은 AFP와 Getty사가 제3자들에게 사진의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사진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대위침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두 업체가 라이선스를 넘기면서 라이선스에 대한 대금을 받았으므로 직접적인 재정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CBS와 CNN이 이로 인한 직접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점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3.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A. 저작권 관리정보(CMI)를 허위로 표시했는지 여부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은 고의로 허위 저작권 관리정보(CMI)를 제공,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상 저작권 관리정보(CMI)는 “저작물 또는 저작 행위, 저작물의 전시(디지털 형태를 포함함)에 첨부되어 있는 일련의 정보”라고 명시되어 있다.

Morel은 AFP가 해당 사진에 “AFP/Getty/Daniel Morel”과 “AFP/Getty/Lisandro Suero”라는 크레딧을 붙였으므로 저작권 관리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AFP는 이 크레딧은 저작권 관리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Morel은

AFP가 CMI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침해를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Morel에 따르면 AFP의 사진 편집자가 Suero의 트윗픽 페이지에 게시된 동일한 사진에 대해 묻기 전에 이미 해당 사진을 봤으며, 편집자의 메일에 답하지 않자 Suero의 사진을 다운로드받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신이 잘 알려진 사진가이고 Suero가 사진을 직접 찍었다고 믿을만한 이유도 없었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AFP는 사진의 원작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사 없이 Suero를 원작자로 내보냈다고 주장한다.

Getty사에 대해서는, AFP가 원작자 표시를 Suero에서 자신으로 바꿔달라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Suero로 내보냈다고 주장한다. Getty사는 사진가로서의 Morel의 명성을 알고 있었고 Suero가 원작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주장을 검토해보면 충분히 이들이 사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과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된다.

B. 저작권 관리정보의 삭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은 고의로 저작권 관리정보를 삭제, 변경, 배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Morel의 트윗픽 페이지에 게시되고 Suero가 복제해간 해당 사진에 저작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는 사실에는 당사자간 이견이 없다. Morel의 트윗픽 페이지에는 이미지 옆에 “Morel”, “by photomorel”이라는 연관어가 게시되어있었고, 더 나아가 트윗픽 계정을 링크시킨 Morel의 페이지에는 “daniel morel”, “photomorel”이라고 게시되어 있었다.

본 법원은 저작권 관리정보가 사진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1202(B) 조항은 삭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디지털멀레니엄저작권법은 저작권 관리정보를 저작물과 함께 전달되는, 즉 저작물 그 자체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Morel의 사진을 보는 사람이 사진 다음에 표시되는 “Morel”, “by photomorel”이라는 연관어가 원작자를 뜻한다는 것을 모를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게다가 본 법원은 저작권 관리정보의 범위를 ‘자동화된 저작권 보호 유지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좁게 해석할 수 없다고 본다.

AFP는 “daniel morel”, “photomorel” 같은 표시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술적 척도”라기보다는 디지털멀레니엄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수행한 저작권 유지체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Morel”, “daniel morel”, “photomorel”이라는 연관어가 법문상 저작권 관리정보의 범주에 명백히 들어간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사전에 침해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Morel은 AFP, CNN, CBS가 사진을 얻기 위해 자신을 접촉했고, 허가 없이 사진을 가져갔으며, 저작권 관리정보를 바꿔서 배포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Getty사가 크레딧 변경 요청을 받은 이후에도 Suero 또는 AFP를 원작자로 표시한 사진을 계속하여 배포했다고 주장한다. Morel은 CBS와 CNN이 자신을 원작자로 표시하지 않고 내보낸 여러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따라서 Morel의 주장은 이유 있어 본안으로 계속하기로 한다.

4. 미국상표법(Lanham Act)을 위반했는지 여부

미국상표법 43(a)(1)은 “출처를 잘못 지정하거나 사실의 표시 또는 묘사가 잘못되거나 애매할 경우, 또

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잘못 기재하거나 오인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특정인과의 제휴, 연계관계, 또는 상품, 서비스의 재정적 후원, 승인여부 등의 사실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

(B) 상업광고나 판촉에 있어 제품이나 서비스, 상업행위의 본질, 특성, 품질, 지리적 출처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43(a)에서 (A)의 조건을 충족하는 잘못된 표시를 했거나 (B)의 조건을 충족하는 잘못된 광고를 했을 때 문제가 된다. 43(a) 조항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생산자의 선의를 손상하는 상표 침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43(a) 조항은 그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신의 것처럼 허위로 공표하는 등의 사기통용행위(passing off)를 금지한다.

Dastar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43(a) 조항이 저작권법에서 우회적으로 인용되거나 저작권자에게 보호막을 주기 위한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상표법은 저작권의 핵심인 독창성이나 진위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서적이거나 비디오 등의 의사소통을 위한 상품에 있어 ‘출처’란 ‘판매를 위해 제공된 상품의 판매자’이며, 이 상품에 내재된 아이디어나 컨셉이 아니다.

따라서 AFP와 Getty사가 상품에 거짓 표시를 하여 광고하였으므로 상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Morel의 주장은 이유없다. Morel은 사진의 크레딧이 “AFP/Getty/Daniel Morel”, “AFP/Getty/Lisandro Suero”로 표시되었으므로 AFP와 Getty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Lisandro Suero가 원작자인 것처럼 이미지의 출처를 허위표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진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는 “의사소통을 위한 상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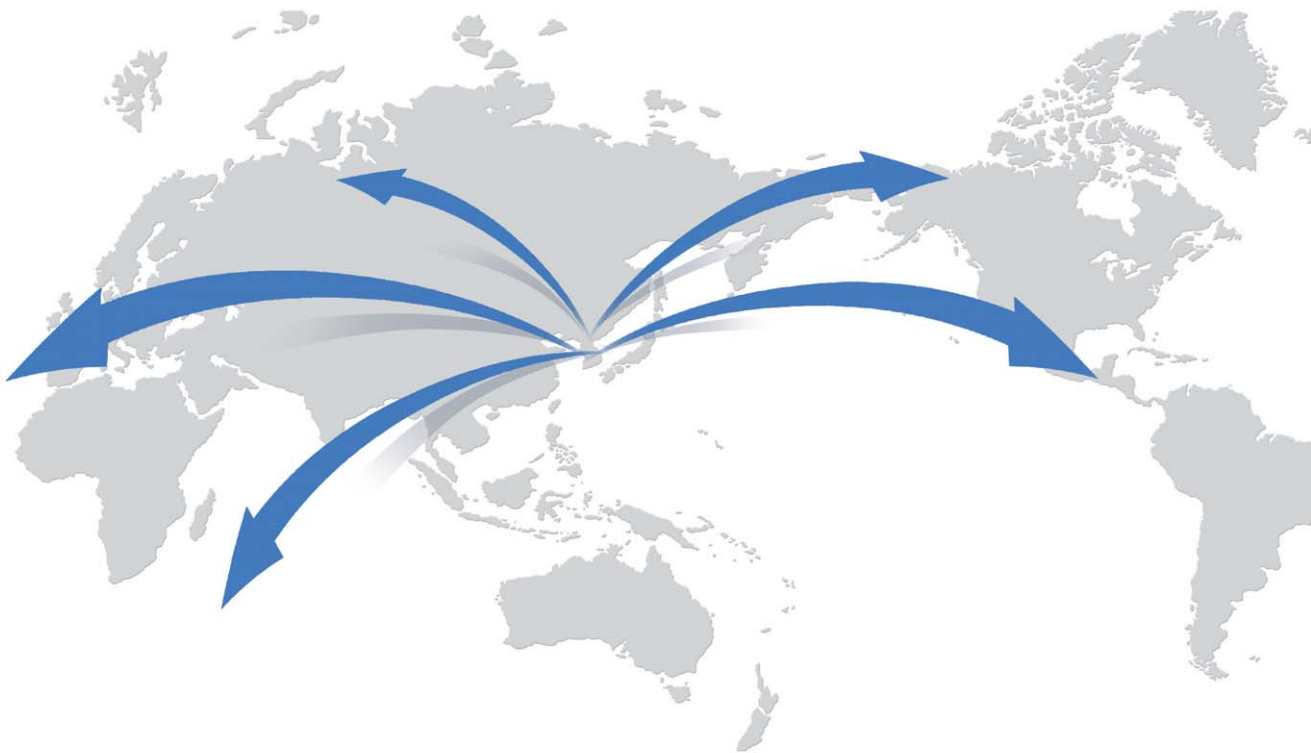
므로 상표법 43(a)(1)(A)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Morel은 본인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되고,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법적 조치를 밟을 수 있으나, 저작권 및 원작자 표시가 잘못되었는지 여부는 상표가 아닌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허위광고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43(a)(1)(B) 조항에 따르면 상업광고나 판촉을 하면서 상품의 특성, 성질, 품질, 지리적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Morel은 AFP와 Getty사가 이들이 해당 사진의 배포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고, 게다가 Suero가 원작자라고 허위 표시하였다며 허위광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두 업체는 사진의 “특성, 성질, 품질, 지리적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없다.

Ⅲ. 결론

이상의 이유로 AFP와 Getty Images, CBS, Turner Broadcasting System의 Morel에 대한 소각하 신청은 일부만 인용하기로 한다. Morel의 청구 중 CBS와 TBS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과 AFP, Getty, CBS, TBS가 상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각하 신청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AFP, Getty, CBS, TBS가 저작권 및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을 침해하였다는 주장과 AFP와 Getty사가 저작권의 기여침해와 대위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본안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외국신문평의회사례

[영국 사례]

언론사가 중범죄자의 신원과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특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청인: 비공개

인용된 조항: 7, 11조

언론사: Staffordshire Newsletter

결정내용

신청인은 스태포드셔셔 뉴스레터(Staffordshire Newsletter)가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여 언론윤리강령 제7조(아동 성폭력)와 제11조(성폭력 피해자)를 위반하였다며 PCC(Press Complaints Commission)에 불만을 제기했다. 논의 결과 해당 보도에 범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되어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되었다.

신청내용

언론사는 아동 성폭력의 용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구속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범인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였다. 또한 피해 아동의 성별, 성적 학대가 시작되었을 무렵의 나이, 학대받은 기간 등을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의 할아버지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해당 기사로 인해 손자의 신원이 특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언론사가 가해자의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주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기사의 다른 세부적인 내용 또한 자신의 손자를 가리키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보도 이후 피해 아동의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누군지 모두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언론사 주장

언론사는 범죄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 신원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정이유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윤리강령 제11조와 별도로, 제7조 또한 “언론은 성폭력의 희생자 또는 목격자가 16세 이하의 아동인 경우 그 신원을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공개하는 것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를 암시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이러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언론사는 기사 내용으로 인해 범

인을 아는 독자가 피해 아동의 신원을 추정할 가능성이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언론사는 범인의 신원을 완전히 공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중에게 그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에 속하며, 사진을 공개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사진 공개 자체를 강령 위반으로 볼 여지는 없다.

한편 PCC는 해당 기사에 포함된 다른 부가적인 정보, 즉 피해아동 및 학대에 대한 내용과 담당 검사, 판사의 인터뷰 내용 등을 검토했다. 각각의 내용은 사소한 것이었으나 전체적으로 독자에게 가해자와 피해아동 간 관계를 추정할 여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PCC는 언론사가 주의 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모두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 아동의 신원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고려하여야 마땅하다. PCC는 언론사의 고의는 없었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판단 아래 해당 신청을 인용했다.

[호주 사례]

명백하게 공익과 관련한 보도에서 자살자의 실명 공개는 자살보도와 관련한 윤리 강령 위반이 아니다.

평결번호 : No.1490

신청인 : David Boothman

언론사 : Perth Voice

결정내용

일부 인용

신청내용

지역지인 퍼스 보이스(Perth Voice)는 최근 WA부 패범죄위원회에서 곧 열릴 심리의 주요 증인이었던 남성의 자살에 대해 보도했는데, 이 기사에 대해 APC(Australian Press Council)에 불만이 제기되었다.

부패범죄위원회의 심리에서는 고인이 스티어링(Stirling) 시 의회의 중견 의원으로 재직 중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기사는 '부정부패 조사, 죽음으로써 중단되다'라는 제목으로 2010년 9월 18일자로 보도되었다.

신청인인 데이빗 부스만(David Boothman) 시의회 의장은 해당 기사에서 죽은 남성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 비윤리적일 뿐더러 전혀 불필요한 보도였다고 전제하면서 죽은 의원이 부정부패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가 전혀 입증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명을 공개한 언론이 퍼스 보이스(Perth Voice)뿐이며, 이후 열린 위원회 심리에서도 “죽은 이의 유족과 친구들의 심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언론사가 유족, 특히 부인과 아이들의 사생활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은 언론사가 해당 기사를 통해 다른 직원 또한 2년 반 전 의회에서 해고당한 뒤 자살한 적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고인의 죽음은 의문사로 종결되었으므로 자살이라고 단정한 것은 부정확하고 불공평하다는 보도였으며, 2년 반 전의 죽음이 이번 자살 건과 연관된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어 유족에게 심적 고통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언론사 주장

언론사는 이번 자살건과 관련, 실명을 공개한 것은 고인이 지역 공무원으로서 부정부패에 관한 조사의 주요 증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능하면 모든 진실을 독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며 다른 언론사에서 자살자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편견일 뿐이고, 이러한 (정신 건강에 관한)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긴급한 필요를 억누르는 불필요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유족과 고인의 친구, 직장 동료들은 이미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이전에 있었던 사망 사건에 대해 언론사는 두 사람의 사망을 둘러싼 제반 사정이 유사하여 뉴스 가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에서 두 죽음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인상을 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결정이유

APC는 언론사가 WA부패범죄위원회에서 주요 증언을 할 예정이었던 고인의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 명백하게 공익과 관련된 보도이므로 자살보도에 대한 윤리강령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APC는 자살로 인한 유족과 친구들의 심적 고통이 보도로 인해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그러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부작용과 유족들의 피해를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기사에서 2년 반 전에 있었던 다른 직원의 죽음에 대해 불필요하게 언급한 것은 공정성을 잃은 행위였다고 판단한다. 언론사가 자살이라고 단정지을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을뿐더러, 두 죽음을 연결 지을 만한 근거도 미약한 상황에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에 대한 신청은 인용되었다.

추가사항

신청인은 APC에 신청하기 이전에 언론사의 편집자와 대표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다. 언론사는 신청인의 의견 전문을 실으면서 이 서한을 보도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 항의서한이 공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며 반대했지만, APC는 해당 서한을 보도한 언론사의 결정이 합당했다고 판단했다.

[아일랜드 사례 1]

언론사가 사망자에 대해 선의(善意)를 가지고 취재·보고하고, 이후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했다면, 그 유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관련 윤리강령 위반이 아니다.

신청인: Gibson

언론사: Irish Daily Mirror

결정내용

프레스 옴부즈맨(The Press Ombudsman)은 아일랜드쉬 데일리 미러(Irish Daily Mirror) 2010년 7월 17일자 보도가 언론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제롬 김슨(Jerome Gibson)이 제기한 신청에 대해 언론사가 충분한 사후 조치를 취했음이 인정된다고 2010년 12월 9일 판단했다.

신청내용

신청인은 해당 기사가 윤리강령 제1조(진실과 정확성), 2조(사실과 의견의 구분), 3조(공정성과 정직성), 4조(권리 존중), 5조(사생활 보호), 8조(편견)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사는 신청인의 여동생의 죽음을 다룬 기사의 제목이 부적절하여 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신청인이 지적한 잘못된 사실관계

를 정당하였다. 또한 모든 취재진에게 개인에게 심적 고통과 충격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취재할 때는 사생활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윤리강령 5·3조를 준수하도록 고지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사과 및 정정보도가 신문의 1면에 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원래의 기사는 11면에 실렸고 언론사는 관련 정정보도를 같은 면 같은 위치에 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신청인은 또한 언론사가 자신의 주장을 100%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언론사는 신청인에게 원하는 보도문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신청인이 거절했다.

결정이유

가족의 죽음이 유족에게 주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이러한 죽음을 보도하는 것은 어떤 보도든 유족에게 고통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도를 아예 막을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언론사가 윤리강령 위반을 일단 인정하였다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다. 부정확한 사실관계가 보도되어 신청인의 고통이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이나 사실관계의 왜곡은 사실상 사소한 것으로 보이고, 언론사가 신청인 여동생의 비극적 죽음에 대해 선의를 가지고 취재 및 보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이 원하는 보도문을 요청한 언론사의 제의가 거절당함으로써 언론사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강령 1,2,4,5조 위반이라는 취지의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취재진에게 사생활 보호에 관한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고지한 언론사의 후속 조치는 사실상 이러한 사건사고를 보도하는 모든 언론사에 추천할 만한 조치였다.

결론적으로, 언론사가 사실관계를 보도함에 있어 공정성과 정직성을 지키지 않았거나, 윤리강령 제8

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심각한 범죄나 증오를 유발하기 위한 보도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고, 따라서 윤리강령 제3조와 제8조 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가사항

신청인은 ombudsman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은 아일랜드 신문평의회에 상정되었다. 아일랜드 신문평의회는 2011년 2월 회의에서 신청인의 이의에 대해 심사숙고하였으나, 새로운 증거나 언론사가 오류를 범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ombudsman의 결정을 인용하였다.

[아일랜드 사례 2]

언론사는 추측이나 루머,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신청인: ESB

언론사: IEvening Herald

결정내용

프레스 ombudsman(The Press Ombudsman)은 이브닝 헤럴드(Evening Herald)가 2010년 10월 21일 한 남성의 자살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살 원인이 전기요금 미지불이라고 단정하여 윤리강령 제2조를 위반하였다고 제기된 신청에 대해 2011년 2월 24일 인용 결정했다. 다른 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기각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신청내용 및 결정이유

해당 기사의 제목은 “아버지는 전기요금 650파운

드 때문에 자살했다”였다. 언론사는 고인과 가까운 사람들, 특히 미망인이 고인이 생전에 전기요금 미납을 가장 걱정해왔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또한 기사 첫 번째 단락에서 “~라고 주장했다”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자살의 실제 원인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죽음의 원인이 몇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한 심각한 재정난이었다는 증거가 있고, 고인의 죽음이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죽음의 원인에 대한 언급이나 추측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기사의 제목은 단순히 전기요금의 미납이 죽음의 원인인 것으로 단정하여 보도하고 있다. 기사의 첫 단락에서 이것이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제목으로 보도함으로써 윤리강령 제2조를 위반한 것이 인정되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은 인용되었다.

그러나 제목이나 기사내용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윤리강령 제1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언론사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추측을 했다면 강령 제4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으나, 언론사 나름대로 ESB를 취재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강령 제4조 위반이라는 취지의 신청은 기각되었다.

추가사항

해당 언론사는 옴부즈맨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은 아일랜드 신문평의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아일랜드 신문평의회는 2011년 4월 1일 옴부즈맨의 결정을 인용하였다.

[뉴질랜드 사례]

개인의 범죄경력에 대한 보도는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언론사는 이를 보도함에 있어 특히 정확성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사건번호: NO.2175

신청인: Craig McConnell

언론사: Timaru Herald

결정내용

신문평의회(Press Council)는 신청인 크레이그 맥코넬(Craig McConnell)이 티마루 헤럴드(Timaru Herald)의 보도에 대해 자신은 강간과 차량 절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신청한 사건에 대해 6:4로 인용 결정했다.

개요

2010년 11월 30일 티마루 헤럴드(Timaru Herald)는 27년 전 퀸즐랜드(Queensland)에서 일어난 미해결 살인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는 피해 여성의 부모와 신청인을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에 실었는데, 신청인은 당시 사건의 용의자였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기사는 신청인의 과거 범죄경력을 언급하면서 신청인이 두 건의 살인 및 강간, 강도, 차량 절도를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신청인은 이 중 강간과 차량 절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변호사가 이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보도 이전인 2010년 11월 25일 신청인의 변호사는 언론사에 서한을 보내 퀸즐랜드(Queensland) 지역 언론의 칼럼을 취재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신청내용

신청인의 변호사는 의뢰인을 강간범에 차량 절도범으로 묘사한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한 보도 이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책임은 언론사에 있다며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신문사의 요청을 거절했다.

또한 신청인이 기소되어 매우 놀랐다는 취지의 당시 담당 경찰관의 이메일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보도가 되었다면 담당 경찰까지도 신청인에게 혐의를 거의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독자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언론사주장

편집인 데이빗 킹(David King)은 기사가 불공정하거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간이나 차량 절도를 저질렀다는 부분의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러한 혐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실수를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사실관계의 오류를 제외하면 해당 보도는 불공정하거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결정이유

미해결 살인 사건은 언제나 대중과 언론의 관심사이다. 미해결사건을 보도하면서 언론사는 죽은 여성의 가족과 경찰의 견해 뿐 아니라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의 견해까지도 고루 취재하여 보도하였다. 신문평의회(Press Council)는 언론사가 담당 경찰관의 견해를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공정성을 잃었다는 견해에 찬성하지 않는다. 다만 언론사는 신청인이 강간과 차량절도를 저질렀다고 잘못된 보도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언론사는 사실관계의 오류를 인정하고 즉시 정정 및 사과보도를 게재했다. 정정보도에 대해서는 더 논하지 않기로 한다.

언론사는 보도 이전에 취재의 근거로 활용할 퀸즐랜드(Queensland) 언론사의 보도가 부정확하므로 정확히 취재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받았다. 따라서 언론사는 해당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러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보도 이후의 정정 및 사과보도에도 불구하고 이미 원 기사가 대중에 공개되어 그 파급력이 커진 상태인데다, 원 보도를 접한 독자 모두가 이후의 정정보도를 읽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렵다.

언론사가 신속히 정정하기는 했으나, 신청인의 대리인이 취재 당시 이미 경고한 사실이 있고 해당 기사 내용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개인의 범죄경력과 관해 보도할 때는 정확성에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강간범으로 묘사된 사람은 일반 대중의 눈에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지게 마련이다.

이 사건에서 언론사는 취재 당시 이미 기사의 내용에 매우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므로, 신문평의회(Press Council)는 이 사건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추가사항

한편, 위원 중 4명은 사건 기각을 주장했다. 이들 소수의견에 따르면 신청인의 변호사가 취재 내용에 부정확한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언론사에 항의할 때 더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했더라면 이러한 기사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았을 수 있으며, 해당 기사의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나 언론사가 즉시 정정함으로써 그 피해가 즉시 구제되었다는 것이다.

언론법제관련문헌

- 고민수 (2011. 5. 30). 방송통합법제에서의 미디어 개념 정립. SSK시장경제선진화사업단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주최, '방송통신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른 미디어법제의 동향과 쟁점' 공동학술세미나 발제문.
- 권상희 (2011. 5. 13). 스마트 미디어와 SNS, 커뮤니케이션 행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전망. 한국언론학회주최, '2011년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권혜진 (2011. 6. 30). 뉴스 생산과정에서 소셜 미디어의 역할: 취재 및 유통방식의 변화.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네트워크 저널리즘 시대의 소셜 미디어의 활용과 전망' 세미나 발제문.
- 김동민 (2011. 5. 4). 언론의 본질과 기능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철학적 논의. 한국언론정보학회주최, '미디어 융합시대, 언론의 본질을 다시 생각한다' 세미나 발제문.
- 김사승 (2011. 6. 30). 소셜 뉴스의 확산과 저널리즘 지형변화.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네트워크 저널리즘 시대의 소셜 미디어의 활용과 전망' 세미나 발제문.
- 김은미 · 김예란 · 임영호 · 김경모 (2011). 블로그 뉴스의 속성과 이용자의 반응. 『방송통신연구』, 통권 74호, 9~41.
- 김지훈 (2011. 5. 27). 디지털시대의 방송의 공익성 제고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주최, '정보화 사회와 공법적 쟁점' 공동학술대회 발제문.
- 김춘식 (2011. 5. 3). 일본의 '東北部 大震災'에 관한 신문(한국 · 일본 · 미국)과 텔레비전(한국 · 일본) 뉴스 내용분석. 한국언론진흥재단주최, '글로벌 시각에서 본 한국 언론의 재난 보도' 토론회 발제문.
- 김학수의 4인 (2011). 『과학과 커뮤니케이션』, 1판.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 김현철 (2011. 5. 13). 존재는 미디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디어관계론. 한국언론학회주최, '2011년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김혜미 · 이준웅 (2011). 인터넷 뉴스와 댓글의 뉴스 프레임 융합 효과 연구. 『한국언론학보』, 55권 2호, 32~55.

- 문재완 (2011). 허위사실의 표현과 표현의 자유 - 한국과 미국의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39집 3호, 113~142.
- 박경신 (2011. 5. 28). 리버럴리즘의 정의론 - 드워킨을 중심으로. 한국법철학회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주최, '2011년 한국법철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제문.
- 박홍원 (2011). 편집권 독립과 언론의 자유. 『언론과학연구』, 11권 1호, 123~156.
- 변상규 (2011. 5. 19). 종편채널, 미디어렙 도입 등 광고시장 경쟁심화와 지역방송 대응 방안. 한국방송학회주최, '민영 미디어렙 및 종편 채널 도입과 지역방송의 대응방안' 세미나 발제문.
- 설원태 (2011. 3. 26). 정상회담과 언론 : 한미 언론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서 본 언론의 국적. 한국언론학회 소속 국제커뮤니케이션 분과주최, '디지털 혁명과 글로벌 공론장 : 신화와 현실' 세미나 발제문.
- 손승우 (2011. 5. 20). 페이스북과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쟁점. 한국소비자법학회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 혁신경쟁과 규제법센터주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와 이용자보호' 공동학술세미나 발제문.
- 송경재 (2011. 4. 15). 모바일 플랫폼과 포털의 협력.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주최, '인터넷의 개방성 : 현황과 과제' 워크숍 발제문.
- 안종묵 (2011). 인터넷 포털미디어의 저널리즘 특성에 관한 고찰. 『언론과학연구』, 11권 1호, 187~218.
- 양재규 (2011. 4). 법을 알고 기사쓰기 61 -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라면 미리 양해를 구해야. 『신문과 방송』, 통권 484호, 90~93.
- 양재규 (2011. 5). 법을 알고 기사쓰기 62 - '비실명 요약보도'로 공익적 목적 달성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야. 『신문과 방송』, 통권 485호, 107~111.
- 양재규 (2011. 6). 법을 알고 기사쓰기 63 - 보도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 사용하고 출처를 꼭 밝혀야. 『신문과 방송』, 통권 486호, 98~101.
- 윤석민 (2011). 『한국사회 소통의 위기와 미디어』, 1판. 서울: 나남출판사.
- 윤성옥 (2011. 5. 26). 방송통신융합시대 방송심의 제도 평가와 과제. 한양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주최, '우리나라 방송통신심의제도의 현실과 쟁점' 학술 심포지움 발제문.
- 이미나 (2011. 5. 13). 신문 기사 제공 방식의 차이에 따른 기사 회상과 뉴스 가치 인식의 차이 : 종이신문과 스마트폰 신문의 비교. 한국언론학회주최, '2011년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이민영 (2011. 4. 15). 인터넷 이용자의 담론 형성과 미네르바 사건.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주최, '인터넷의 개방성 : 현황과 과제' 워크숍 발제문.

- 이승선 (2011).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방송통신연구』, 통권 74호, 64~98.
- 이승선 (2011. 6. 9). 미디어의 진화와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방안. 한국언론법학회주최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방송광고제도의 현황과 전망' 학술대회 발제문.
- 이완수 (2011. 5. 4). 매체융합시대 저널리즘의 변동성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주최, '미디어 융합시대, 언론의 본질을 다시 생각한다' 세미나 발제문.
- 이원재 · 이봉현 (2011. 5. 4). 미디어 기업의 사회책임 경영. 한국언론정보학회주최, '미디어 융합시대, 언론의 본질을 다시 생각한다' 세미나 발제문.
- 이재진 · 이승선 (2011. 3. 24). 언론법제 연구의 최근 동향 분석: 2009-2010. 한국언론법학회주최, '언론법의 최근 동향의 분석' 학술세미나 발제문.
- 이종관 (2011. 6. 9). 미디어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방안. 한국언론법학회주최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방송광고제도의 현황과 전망' 학술대회 발제문.
- 이종원 (2011. 5. 30).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방송 관련 법제의 문제점. SSK시장경제선진화사업단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주최, '방송통신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른 미디어 법제의 동향과 쟁점' 공동학술세미나 발제문.
- 이진로 (2011. 5. 13). 종합편성채널 시대와 지역신문. 한국언론학회주최, '2011년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이현주 (2011. 3. 26). 뉴미디어 혁명과 뉴스 이용양상의 변화: 국가 간 뉴스 소비행태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회 소속 국제커뮤니케이션 분과주최, '디지털 혁명과 글로벌 공론장: 신화와 현실' 세미나 발제문.
- 장병희 (2011. 6. 30). 네트워크 저널리즘의 발전과 소셜 미디어의 전망.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네트워크 저널리즘 시대의 소셜 미디어의 활용과 전망' 세미나 발제문.
- 정성욱 (2011. 5. 4). 공론장의 새로운 구조변동과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한국언론정보학회주최, '미디어 융합시대, 언론의 본질을 다시 생각한다' 세미나 발제문.
- 정필운 (2011. 6. 9). 스마트 시대의 미디어 광고제도의 전망. 한국언론법학회주최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방송광고제도의 현황과 전망' 학술대회 발제문.
- 조소영 (2011. 5. 27). 표현의 자유의 현실과 법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주최, '정보화 사회와 공법적 쟁점' 공동학술대회 발제문.
- 조연하 (2011. 5. 26). 통신심의의 실제: 심의규정 위반 판단요소를 중심으로. 한양대 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주최, '우리나라 방송통신심의제도의 현실과 쟁점' 학술 심포지움 발제문.

- 주은수 (2011. 5. 13). 한국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 방안 : 실전마케팅 사례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주최, '2011년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주정민 (2011. 5. 19). 종편채널과 지역방송의 비대칭 규제 현황 및 규제체계 개선방안. 한국방송학회주최, '민영 미디어랩 및 종편채널 도입과 지역방송의 대응방안' 세미나 발제문.
- 지성우 (2011. 4. 7). 재난방송의 올바른 역할과 책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주최, '재난관련방송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
- 최선정 (2011. 4. 22). 미네르바 신드롬과 탈 정보화된 정보사회.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주최, '2011년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홍성구 (2011). '아레오파지티카'에 나타난 공화주의와 언론자유. 『한국언론학보』, 55권 2호, 178~201.
- 홍종배 (2011. 5. 13). 스마트 미디어와 SNS, 커뮤니케이션 혁명의 도구인가? : 비즈니스적 진단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주최, '2011년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황성기 (2011. 3. 24). 2010년 언론관련 판례 동향. 한국언론법학회주최, '언론법의 최근 동향의 분석' 학술세미나 발제문.
- 황유선 (2011. 5. 13). SNS 매개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참여. 한국언론학회주최, '2011년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안내

서울중재부 및 사무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대표전화 02) 397 - 3114 언론분쟁상담 02) 397 - 3000, 3010, 3100, 3110 팩스 02) 397 - 3089
부산중재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03-17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8층 전화 051) 759 - 7083~4 팩스 051) 759 - 7093
대구중재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541-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053) 763 - 0020~1 팩스 053) 763 - 0242
광주중재부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74-2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A동 5층 전화 062) 676 - 0360~1 팩스 062) 676 - 0362
대전중재부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27-1 한국방송광고공사빌딩 5층 전화 042) 525 - 0778~9 팩스 042) 525 - 0768
경기중재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1116-1) 경기문화재단 8층 전화 031) 211 - 9022, 9027 팩스 031) 211 - 0223
강원중재부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4-9 무림빌딩 8층 전화 033) 255 - 2878~9 팩스 033) 255 - 2872
충북중재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변호사빌딩 404호 전화 043) 286 - 8081, 8083 팩스 043) 286 - 8084
전북중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2가 140-11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전화 063) 288 - 0010, 0981 팩스 063) 288 - 0980
경남중재부	경남 창원시 사파동 80번지 보고빌딩 601호 전화 055) 263 - 1780, 1787 팩스 055) 263 - 1769
제주중재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81-3 현곡빌딩 4층 전화 064) 722 - 3328, 3352 팩스 064) 726 - 3201